

제 출 문

경기도의회 의장(경기도의회 산업단지활성화포럼) 귀하

본 연구보고서를 귀 의회로부터 의뢰받은
「경기도 산업단지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지원방안 연구」의
최종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20. 12.

신안산대학교 산학협력단

목 차

제1장 연구 추진 계획	1
제1절 연구의 개요	3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내용	5
제3절 연구의 추진 계획	7
제2장 경기도 산업단지 현황 및 지원 조례	8
제1절 경기도 산업단지 현황 조사 및 분석	10
제2절 경기도 산업단지 지원 조례	24
제3절 경기도 산업단지 지원의 필요성	33
제3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산업단지 지원 법령 및 조례	36
제1절 국가의 산업단지 지원 법령	38
제2절 경상북도의 산업단지 지원 조례	43
제3절 광주광역시의 산업단지 지원 조례	45
제4절 대구광역시의 산업단지 지원 조례	47
제5절 인천광역시의 산업단지 지원 조례	49
제6절 전라남도의 산업단지 지원 조례	52
제7절 경기도 및 타 지방자치단체의 산업단지 지원 조례 비교	54
제4장 국내 지방자치단체의 산업단지 지원 사례	57
제1절 경상북도 산업단지 지원 사례	59
제2절 광주광역시 산업단지 지원 사례	61
제3절 대구광역시 산업단지 지원 사례	63
제4절 인천광역시 산업단지 지원 사례	65

제5절 전라남도 산업단지 지원 사례	67
제6절 산업단지 지원 사례의 시사점	69
 제5장 경기도 산업단지 지원방안	71
제1절 경기도 산업단지 지원을 위한 조례(안)	73
제2절 경기도 산업단지 개발을 위한 모델(안)	77
제3절 경기도 산업단지 활성화 방안	82
 제6장 결론 및 정책제언	87
제1절 결론	89
제2절 정책제언	91
 참고문헌	95
 부록	97

표 목 차

<표 1-1> 추진 일정표	7
<표 2-1> 반월 산업단지의 입주업체	10
<표 2-2> 시화 산업단지의 입주업체	11
<표 2-3> 시화MTV 산업단지의 입주업체	11
<표 2-4> 파주출판 산업단지의 입주업체	11
<표 2-5> 파주탄현 산업단지의 입주업체	12
<표 2-6> 반월 산업단지의 생산실적	13
<표 2-7> 시화 산업단지의 생산실적	13
<표 2-8> 시화MTV 산업단지의 생산실적	14
<표 2-9> 파주출판 산업단지의 생산실적	14
<표 2-10> 파주탄현 산업단지의 생산실적	14
<표 2-11> 반월 산업단지의 수출실적	15
<표 2-12> 시화 산업단지의 수출실적	15
<표 2-13> 시화MTV 산업단지의 수출실적	16
<표 2-14> 파주출판 산업단지의 수출실적	16
<표 2-15> 파주탄현 산업단지의 수출실적	17
<표 2-16> 반월 산업단지의 고용현황	17
<표 2-17> 시화 산업단지의 고용현황	18
<표 2-18> 시화MTV 산업단지 의 고용현황	18
<표 2-19> 파주출판 산업단지의 고용현황	19
<표 2-20> 파주탄현 산업단지의 고용현황	19
<표 2-21> 반월 산업단지의 가동률	20
<표 2-22> 시화 산업단지의 가동률	20
<표 2-23> 시화MTV 산업단지의 가동률	21

<표 2-24> 파주출판 산업단지의 가동률	21
<표 2-25> 파주탄현 산업단지의 가동률	21
<표 3-1> 경기도와 경상북도의 산업단지 지원 조례 비교	54
<표 3-2> 경기도와 광주광역시의 산업단지 지원 조례 비교	54
<표 3-3> 경기도와 대구광역시의 산업단지 지원 조례 비교	55
<표 3-4> 경기도와 인천광역시의 산업단지 지원 조례 비교	55
<표 3-5> 경기도와 전라남도의 산업단지 지원 조례 비교	56
<표 4-1> 경상북도 주요 사업	59
<표 4-2> 광주광역시 주요 사업	61
<표 4-3> 대구광역시 주요 사업	63
<표 4-4> 인천광역시 주요 사업	65
<표 4-5> 전라남도 주요 사업	67
<표 5-1> 경기도 추진전략과 주요사업(안)	77

그 림 목 차

<그림 2-1> 경기도 산업단지의 경제적 효과	35
<그림 4-1> 경상북도 혁신계획 구성	60
<그림 4-2> 광주광역시 혁신계획 구성	62
<그림 4-3> 대구광역시 혁신계획 구성	64
<그림 4-4> 인천광역시 혁신계획 구성	66
<그림 4-5> 전라남도 혁신계획 구성	68
<그림 5-1> 경기도 혁신계획 구성(안)	80

제 1 장

연구 추진 계획

여 백

제1장 연구 추진 계획

제1절 연구의 개요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 경기도 산업단지는 2020년 1분기 기준 184개로 전국 대비 약 15%를 차지하고 있으며 지난 수년간 입주업체, 고용, 생산, 수출 증가율이 증가하여 국가 경제에 상당한 기여를 하고 있음
 - 경기도 산업단지는 지역경제 활성화의 주요 거점으로 조성되었으며 경기도의 제조업 고용, 생산, 수출의 높은 비율을 차지하며 지역경제에서 상당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 현재, 경기도 산업단지는 지역적·공간적으로 편중되어 있으며 특히 경기 북동부 지역은 산업단지 개발에 한계를 가지고 있음
 - 경기도 산업단지의 면적·고용자·생산액의 90% 이상은 남서부지역(수원, 화성 등 17개 시·군)에 편중되어 있음
 - 경기 북동부지역의 경우 난개발로 인하여 교통·환경 등의 피해를 겪고 있으며 기업들은 이탈 현상을 보이고 있음(경기일보, 2020.01)
- 경기도 산업단지가 차지하는 경제적 효과가 크기 때문에 4차 산업혁명 대응 및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수단으로 기존에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경기도 내 산업단지의 지원을 통해 지역균형을 이루어야 함
 - 경기도의 지역균형 산업 단지 개발을 실현하기 위해 제도 개선 및 지원방안 마련이 필요함
 - 2013년 기준 입주기업의 취업유발효과는 약 46.3천명(경기도 취업자 7.7%), 약 92조 7천 94억원의 생산유발 및 약 29조 381억원의 부가가치유발 효과가 있는 것으로 조사됨(경기도시공사, 2014)
 - 따라서 경기도 내 산업단지를 활성화하는 방안 마련이 필요함

2. 연구의 목적

- 경기도 내 산업단지 현황 조사 및 분석을 통한 도내 산업단지 지원방향 제시
- 지역적, 공간적으로 편중된 산업단지 문제 해결을 위한 지역균형 산업단지 개발 제도개선 및 지원방안 마련
- 산업단지의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을 통해 산업단지 지원을 위한 조례제정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내용

1. 연구의 범위

○ 공간적 범위

- 경기도 내 국가산업단지를 공간적 범위로 함

○ 시간적 범위

- 2020년을 기준으로 하여 추이는 2018년부터 2020년까지 3년으로 파악함

○ 내용적 범위

- 경기도 국가산업단지 현황 파악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산업단지 지원 법령 및 조례 조사
- 지방자치단체의 산업단지 지원 사례 조사
- 경기도 산업단지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지원방안에 관한 정책 제시, 조례 제·개정 제안, 정책 및 사업 근거자료로 활용 등

2. 연구의 내용

○ 경기도 국가산업단지 현황 조사 및 분석

- 경기도내 국가산업단지 현황 조사
- 경기도 지역별 국가산업단지의 실태 분석
- 산업단지의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

○ 경기도 산업단지 지원 필요성 제시

- 산업단지 활성화를 통한 경제창출 효과 및 지역경제 활성화
- 남서부 지역에 편중된 산업단지 문제 해결을 위한 균형 지원 방안 필요

- 현행 산업단지 지원 법령 및 조례 파악
 - 중앙정부의 산업단지 지원 법령 조사
 - 지방자치단체의 산업단지 지원 조례 조사

- 경기도 산업단지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지원방안 제시
 - 경기도의 지역균형 산업단지 개발을 실현하기 위한 제도개선 제시
 - 경기도 산업단지 지원을 위한 조례 개정(안) 제시
 - 경기도 산업단지 지원을 위한 통한 활성화방안(안) 제시

3. 연구의 방법

- 국내외 사회·경제적 변화와 산업단지의 정책변화 파악을 위한 정책자료, 통계자료 등의 자료 조사와 논문, 저서, 저널 등의 기존 문헌조사 실시
 - 경기도 내 산업단지 현황 조사
 - 도내 현황 및 산업단지 지원을 위한 선행연구 조사
 - 현행 산업단지 지원 법령 및 조례 조사
 - 경기도 산업단지 추진 계획 조사(경기도 종합계획 등)

제3절 연구의 추진 계획

1. 연구의 일정

○ 연구의 추진 일정표는 다음 <표 1-1>과 같음

<표 1-1> 추진 일정표

항목	추진일정											
	M+1			M+2			M+3					
1. 착수보고 및 자문회의 실시												
2. 경기도 국가산업단지 현황 조사 및 분석												
3. 경기도 산업단지 지원 필요성 제시												
4. 중간보고 및 자문회의 실시												
5. 산업단지 지원 법령 및 조례 파악												
6. 경기도 산업단지 제도적 지원방안 제시												
7. 최종보고 및 자문회의 실시												

제 2 장

경기도 산업단지 현황 및 지원 조례

여 백

제2장 경기도 산업단지 현황 및 지원 조례

제1절 경기도 산업단지 현황 조사 및 분석

1. 경기도 국가산업단지 업종별 입주업체 현황

- 2020년 8월 기준으로 반월 산업단지 7,306개, 시화 산업단지 11,303개, 시화MTV 1,018개, 파주출판 587개, 파주탄현 40개로 조사되었음(한국산업단지공단, 2020)
- 반월 산업단지의 입주업체는 2018년에서 2019년에 감소 추세에 있다가 2020년에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음
 - 음식료, 석유화학, 운송장비, 비제조 업종은 꾸준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음
 - 철강 업종은 꾸준한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음

<표 2-1> 반월 산업단지의 입주업체(한국산업단지공단, 2018~2020)

(단위: 개)

업종 연도	음식료	섬유 의복	목재 종이	석유 화학	비금속	철강	기계	전기 전자	운송 장비	기타	비제조	총계
2018.8	84	322	263	574	27	206	2,699	2,559	243	75	55	7,107
2019.8	86	310	263	584	28	193	2,653	2,518	244	76	61	7,016
2020.8	93	405	285	608	28	187	2,728	2,579	248	72	73	7,306

- 시화 산업단지의 입주업체는 2018년에서 2019년에 증가 추세에 있다가 2020년에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음
 - 운송장비 업종은 꾸준한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음

<표 2-2> 시화 산업단지의 입주업체(한국산업단지공단, 2018~2020)

(단위: 개)

업종 연도	음식료	섬유 의복	목재 종이	석유 화학	비금속	철강	기계	전기 전자	운송 장비	기타	비제조	총계
2018.8	65	170	288	813	42	740	6,836	1,687	437	158	153	11,389
2019.8	65	168	297	817	44	750	7,003	1,771	436	160	151	11,662
2020.8	61	215	282	783	42	704	6,765	1,712	412	151	176	11,303

○ 시화MTV 산업단지의 입주업체는 2018년에서 2020년까지 꾸준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음

- 비금속, 철강, 기계, 전기전자 업종은 꾸준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특히 섬유의복의 경우 2020년에 1개의 업체가 입주하였음

<표 2-3> 시화MTV 산업단지의 입주업체(한국산업단지공단, 2018~2020)

(단위: 개)

업종 연도	음식료	섬유 의복	목재 종이	석유 화학	비금속	철강	기계	전기 전자	운송 장비	기타	비제조	총계
2018.8	0	0	0	34	6	182	280	330	0	0	49	881
2019.8	0	0	0	33	7	192	322	362	0	0	60	976
2020.8	0	1	0	36	8	195	363	389	0	0	26	1,018

○ 파주출판 산업단지의 입주업체는 2018년에서 2020년까지 꾸준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음

- 비제조 업종은 꾸준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음

<표 2-4> 파주출판 산업단지의 입주업체(한국산업단지공단, 2018~2020)

(단위: 개)

업종 연도	음식료	섬유 의복	목재 종이	석유 화학	비금속	철강	기계	전기 전자	운송 장비	기타	비제조	총계
2018.8	0	0	135	0	0	0	0	0	0	0	315	450
2019.8	0	0	141	0	0	0	0	0	0	0	441	582
2020.8	0	0	131	0	0	0	0	0	0	0	456	587

○ 파주탄현 산업단지의 입주업체는 2018년에서 2020년까지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음

- 섬유 의복 업종은 2020년에 1개의 업체가 입주하였음

<표 2-5> 파주탄현 산업단지의 입주업체(한국산업단지공단, 2018-2020)

(단위: 개)

업종 연도	음식료	섬유 의복	목재 종이	석유 화학	비금속	철강	기계	전기 전자	운송 장비	기타	비제조	총계
2018.8	1	0	1	12	0	0	19	8	3	0	0	44
2019.8	1	0	1	13	0	0	20	7	2	0	0	44
2020.8	1	1	1	10	0	0	17	8	2	0	0	40

2. 경기도 국가산업단지 업종별 생산실적 현황

○ 2020년 8월 기준으로 반월 산업단지 23,014억원, 시화 산업단지 23,154억원, 시화 MTV 3,065억원, 파주출판 266억원, 파주탄현 40억원으로 조사되었음(한국산업단지공단, 2020)

○ 반월 산업단지의 생산실적은 2018년에서 2020년까지 꾸준한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음

- 기타 업종은 꾸준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음
- 섬유 의복, 목재 종이, 비금속, 철강, 기계, 전기전자 업종은 꾸준한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음

<표 2-6> 반월 산업단지의 생산실적(한국산업단지공단, 2018~2020)

(단위: 억원)

업종 연도	음식료	섬유 의복	목재 종이	석유 화학	비금속	철강	기계	전기 전자	운송 장비	기타	총계
2018.8	831	1,150	1,054	5,104	144	1,744	7,759	9,566	2,494	77	29,925
2019.8	798	1,122	999	4,674	139	1,572	4,327	8,020	2,611	120	24,380
2020.8	1,041	1,023	981	4,691	134	1,564	3,747	7,203	2,500	130	23,014

○ 시화 산업단지의 생산실적은 2018년에서 2020년까지 꾸준한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음

- 음식료 업종은 꾸준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음
- 섬유·의복, 목재·종이, 석유·화학, 비금속, 철강, 기계, 전기·전자, 기타 업종은 꾸준한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음

<표 2-7> 시화 산업단지의 생산실적(한국산업단지공단, 2018~2020)

(단위: 억원)

업종 연도	음식료	섬유 의복	목재 종이	석유 화학	비금속	철강	기계	전기 전자	운송 장비	기타	총계
2018.8	1,034	182	1,511	7,145	88	3,864	13,142	4,617	1,693	250	33,526
2019.8	1,089	160	1,451	5,060	87	3,498	8,852	2,518	1,698	237	24,650
2020.8	1,102	141	1,299	4,370	82	3,247	8,792	2,475	1,431	215	23,154

○ 시화MTV 산업단지의 생산실적은 2018년에서 2020년까지 꾸준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음

- 철강, 기계, 전기·전자 업종은 꾸준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음

<표 2-8> 시화MTV 산업단지의 생산실적(한국산업단지공단, 2018~2020)

(단위: 억원)

업종 연도	음식료	섬유 의복	목재 종이	석유 화학	비금속	철강	기계	전기 전자	운송 장비	기타	총계
2018.8	0	0	0	184	7	484	1,034	920	1	0	2,631
2019.8	0	0	0	185	7	509	1,083	943	0	0	2,728
2020.8	0	0	0	184	9	599	1,330	944	0	0	3,065

- 파주출판 산업단지의 생산실적은 2018년에서 2020년까지 꾸준한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음
- 목재종이 업종은 꾸준한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기타 업종의 생산실적은 2019년 이후로 '0' 으로 변하였음

<표 2-9> 파주출판 산업단지의 생산실적(한국산업단지공단, 2018~2020)

(단위: 억원)

업종 연도	음식료	섬유 의복	목재 종이	석유 화학	비금속	철강	기계	전기 전자	운송 장비	기타	총계
2018.8	0	0	346	0	0	0	0	0	0	1	347
2019.8	0	0	337	0	0	0	0	0	0	0	337
2020.8	0	0	266	0	0	0	0	0	0	0	266

- 파주탄현 산업단지의 생산실적은 2018년에서 2020년까지 꾸준한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음
- 기계, 운송장비 업종은 꾸준한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음

<표 2-10> 파주탄현 산업단지의 생산실적(한국산업단지공단, 2018~2020)

(단위: 억원)

업종 연도	음식료	섬유 의복	목재 종이	석유 화학	비금속	철강	기계	전기 전자	운송 장비	기타	총계
2018.8	0	0	0	20	0	0	16	11	5	0	52
2019.8	0	0	0	16	0	0	15	13	4	0	49
2020.8	0	0	0	16	0	0	10	12	3	0	40

3. 경기도 국가산업단지 업종별 수출실적 현황

- 2020년 8월 기준으로 반월 산업단지 389백만달러, 시화 산업단지 331백만달러, 시화MTV 49백만달러, 파주출판과 파주탄현은 0원으로 조사되었음(한국산업단지공단, 2020)
- 반월 산업단지의 수출실적은 2018년에서 2020년까지 꾸준한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음
 - 섬유 의복, 철강, 기계, 전기전자 업종은 꾸준한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음

<표 2-11> 반월 산업단지의 수출실적(한국산업단지공단, 2018-2020)

(단위: 백만달러)

업종 연도	음식료	섬유 의복	목재 종이	석유 화학	비금속	철강	기계	전기 전자	운송 장비	기타	총계
2018.8	1	41	11	75	7	15	113	247	28	1	539
2019.8	1	30	9	74	7	10	93	226	29	2	480
2020.8	1	24	9	67	6	11	58	187	22	2	389

- 시화 산업단지의 수출실적은 2018년에서 2019년에 감소 추세에 있다가 2020년에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음
 - 섬유 의복 업종과 전기전자 업종은 2020년에 수출실적이 급격히 증가하였으며 비금속 업종은 2020년에 첫 수출실적을 달성하였음
 - 철강, 기계, 운송장비 업종은 꾸준한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음

<표 2-12> 시화 산업단지의 수출실적(한국산업단지공단, 2018-2020)

(단위: 백만달러)

업종 연도	음식료	섬유 의복	목재 종이	석유 화학	비금속	철강	기계	전기 전자	운송 장비	기타	총계
2018.8	2	5	7	93	0	33	147	97	36	1	422
2019.8	3	4	5	96	0	26	116	50	34	1	335
2020.8	1	24	9	67	6	11	58	187	22	2	389

○ 시화MTV 산업단지의 수출실적은 2018년에서 2019년에 감소 추세에 있다가 2020년에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음

- 석유화학 업종은 2019년에 처음으로 수출실적을 달성하였음

<표 2-13> 시화MTV 산업단지의 수출실적(한국산업단지공단, 2018~2020)

(단위: 백만달러)

업종 연도	음식료	섬유 의복	목재 종이	석유 화학	비금속	철강	기계	전기 전자	운송 장비	기타	총계
2018.8	0	0	0	0	0	2	25	26	0	0	53
2019.8	0	0	0	1	0	2	13	24	0	0	40
2020.8	0	0	0	1	0	3	19	27	0	0	49

○ 파주출판 산업단지의 수출실적은 2018년에서 2019년에 동일한 수출실적을 달성하였으며 2020년에 수출실적을 달성하지 못하였음

- 목재종이 업종은 2018 ~ 2019년에 수출실적을 달성하였으나 2020년에 수출실적을 달성하지 못하였음

<표 2-14> 파주출판 산업단지의 수출실적(한국산업단지공단, 2018~2020)

(단위: 백만달러)

업종 연도	음식료	섬유 의복	목재 종이	석유 화학	비금속	철강	기계	전기 전자	운송 장비	기타	총계
2018.8	0	0	1	0	0	0	0	0	0	0	1
2019.8	0	0	1	0	0	0	0	0	0	0	1
2020.8	0	0	0	0	0	0	0	0	0	0	0

○ 파주탄현 산업단지의 수출실적은 2018 ~ 2020년에 걸쳐 수출실적을 달성하지 못하였음

<표 2-15> 파주탄현 산업단지의 수출실적(한국산업단지공단, 2018-2020)

(단위: 백만달러)

업종 연도	음식료	섬유 의복	목재 종이	석유 화학	비금속	철강	기계	전기 전자	운송 장비	기타	총계
2018.8	0	0	0	0	0	0	0	0	0	0	0
2019.8	0	0	0	0	0	0	0	0	0	0	0
2020.8	0	0	0	0	0	0	0	0	0	0	0

4. 경기도 국가산업단지 업종별 고용 현황

- 2020년 8월 기준으로 반월 산업단지 114,090명, 시화 산업단지 122,823명, 시화 MTV 11,529명, 파주출판 4,490명, 파주탄현 313명으로 조사되었음(한국산업단지공단, 2020)
- 반월 산업단지의 고용은 2018년에서 2020년까지 꾸준한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음
 - 비제조 업종은 꾸준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음
 - 음식료, 섬유 의복, 석유 화학, 철강, 전기 전자, 운송 장비, 기타 업종은 꾸준한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음

<표 2-16> 반월 산업단지의 고용현황(한국산업단지공단, 2018-2020)

(단위: 명)

업종 연도	음식료	섬유 의복	목재 종이	석유 화학	비금속	철강	기계	전기 전자	운송 장비	기타	비제조	총계
2018.8	2,281	6,737	2,903	15,655	373	3,106	35,408	39,480	10,823	422	1,083	118,271
2019.8	2,263	6,342	2,797	15,525	375	2,746	34,853	39,006	10,692	365	1,129	116,093
2020.8	1,995	6,009	2,822	15,193	354	2,596	35,805	37,664	10,209	312	1,131	114,090

○ 시화 산업단지의 고용은 2018년에서 2020년까지 꾸준한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음

- 석유화학 업종은 꾸준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음
- 섬유 의복, 기계, 운송장비, 기타 업종은 꾸준한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음

<표 2-17> 시화 산업단지의 고용현황(한국산업단지공단, 2018-2020)

(단위: 명)

업종 연도	음식료	섬유 의복	목재 종이	석유 화학	비금속	철강	기계	전기 전자	운송 장비	기타	비제조	총계
2018.8	2,772	1,587	3,536	14,591	378	7,917	61,195	25,471	7,037	971	2,048	127,503
2019.8	2,742	1,457	3,563	14,652	382	7,529	59,550	24,919	6,637	931	2,082	124,444
2020.8	2,799	1,356	3,456	14,780	369	7,553	58,394	24,944	6,200	904	2,068	122,823

○ 시화MTV 산업단지의 고용은 2018년에서 2019년에 감소 추세에 있다가 2020년에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음

- 비제조 업종은 꾸준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음
- 기계 업종은 꾸준한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운송장비 업종은 2019년 이후 고용이 없음

<표 2-18> 시화MTV 산업단지의 고용현황(한국산업단지공단, 2018-2020)

(단위: 명)

업종 연도	음식료	섬유 의복	목재 종이	석유 화학	비금속	철강	기계	전기 전자	운송 장비	기타	비제조	총계
2018.8	0	0	0	485	35	1,827	3,803	5,351	8	0	274	11,783
2019.8	0	0	0	478	40	1,733	3,709	5,089	0	0	275	11,324
2020.8	0	0	0	478	39	1,744	3,385	5,591	0	0	292	11,529

○ 파주출판 산업단지의 고용은 2018년에서 2020년까지 꾸준한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음

- 목재종이 업종은 꾸준한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기타 업종은 2019년 이후 고용이 없음

〈표 2-19〉 파주출판 산업단지의 고용현황(한국산업단지공단, 2018-2020)

(단위: 명)

업종 연도	음식료	섬유 의복	목재 종이	석유 화학	비금속	철강	기계	전기 전자	운송 장비	기타	비제조	총계
2018.8	0	0	2,209	0	0	0	0	0	0	67	2,583	4,859
2019.8	0	0	2,177	0	0	0	0	0	0	0	2,590	4,767
2020.8	0	0	1,988	0	0	0	0	0	0	0	2,502	4,490

○ 파주탄현 산업단지의 고용은 2018년에서 2020년까지 꾸준한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음

- 석유화학, 전기전자, 운송장비 업종은 꾸준한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음

〈표 2-20〉 파주탄현 산업단지의 고용현황(한국산업단지공단, 2018-2020)

(단위: 명)

업종 연도	음식료	섬유 의복	목재 종이	석유 화학	비금속	철강	기계	전기 전자	운송 장비	기타	비제조	총계
2018.8	3	0	0	146	0	0	129	86	30	0	0	394
2019.8	3	0	2	99	0	0	140	83	20	0	0	347
2020.8	2	2	2	93	0	0	131	64	19	0	0	313

5. 경기도 국가산업단지 업종별 가동률 현황

○ 2020년 8월 기준으로 반월 산업단지 65.5%, 시화 산업단지 65.7%, 시화MTV 60.7%, 파주출판 58.3%, 파주탄현 52.8%로 조사되었음(한국산업단지공단, 2020)

○ 반월 산업단지의 가동률은 2018년에서 2019년에 증가 추세에 있다가 2020년에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음

- 기타 업종은 꾸준한 증가 추세를 보이며 음식료 업종은 2020년에 증가 추세를 보임

- 섬유·의복, 석유·화학 업종은 꾸준한 감소 추세를 보이며 특히 전기전자 업종은 2020년에 급격한 가동률의 하락을 보임

<표 2-21> 반월 산업단지의 가동률(한국산업단지공단, 2018~2020)

(단위: %)

업종 연도	음식료	섬유 의복	목재 종이	석유 화학	비금속	철강	기계	전기 전자	운송 장비	기타	평균
2018.8	73.7	75.9	75.2	83.2	88.9	63.5	54.4	69.4	78.3	77.4	67.4
2019.8	73.0	67.3	76.9	76.7	88.4	63.5	70.8	70.7	81.9	79.6	72.6
2020.8	81.8	58.7	76.9	76.2	89.2	64.9	63.1	56.5	76.8	86.3	65.5

○ 시화 산업단지의 가동률은 2018년에서 2020년까지 꾸준한 감소 추세에 있음

- 전기전자 업종은 꾸준한 증가 추세를 보임
- 섬유·의복, 목재·종이, 석유·화학, 철강, 운송·장비, 기타 업종은 꾸준한 감소 추세를 보임

<표 2-22> 시화 산업단지의 가동률(한국산업단지공단, 2018~2020)

(단위: %)

업종 연도	음식료	섬유 의복	목재 종이	석유 화학	비금속	철강	기계	전기 전자	운송 장비	기타	평균
2018.8	73.8	56.1	77.7	81.1	68.5	80.8	66.5	58.0	79.9	77.1	70.5
2019.8	74.3	50.1	74.6	72.8	66.7	72.2	56.9	68.2	79.4	74.1	66.0
2020.8	72.5	43.5	67.1	67.4	69.4	68.9	61.3	70.4	72.1	68.2	65.7

○ 시화MTV 산업단지의 가동률은 2018년에서 2019년에 증가 추세에 있다가 2020년에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음

- 비금속, 기계 업종은 꾸준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음
- 석유·화학 업종은 꾸준한 감소 추세를 보이며 운송·장비 업종은 2019년부터 가동률이 없음

〈표 2-23〉 시화MTV 산업단지의 가동률(한국산업단지공단, 2018~2020)

(단위: %)

업종 연도	음식료	섬유 의복	목재 종이	석유 화학	비금속	철강	기계	전기 전자	운송 장비	기타	평균
2018.8	-	-	-	96.7	44.0	58.9	59.4	53.3	92.9	-	58.5
2019.8	-	-	-	91.9	50.8	51.8	63.7	59.8	-	-	60.9
2020.8	-	-	-	91.3	55.7	56.3	65.5	54.2	-	-	60.7

○ 파주출판 산업단지의 가동률은 2018년에서 2020년까지 꾸준한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음

- 목재종이 업종은 꾸준한 감소 추세이며 기타 업종은 2019년부터 가동률이 없음

〈표 2-24〉 파주출판 산업단지의 가동률(한국산업단지공단, 2018~2020)

(단위: %)

업종 연도	음식료	섬유 의복	목재 종이	석유 화학	비금속	철강	기계	전기 전자	운송 장비	기타	평균
2018.8	-	-	65.3	-	-	-	-	-	-	100.0	65.4
2019.8	-	-	62.3	-	-	-	-	-	-	-	62.3
2020.8	-	-	58.3	-	-	-	-	-	-	-	58.3

○ 파주탄현 산업단지의 가동률은 2018년에서 2020년까지 꾸준한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음

- 전기전자, 운송장비 업종은 꾸준한 증가 추세를 보임
- 음식료, 기계 업종은 꾸준한 감소 추세를 보임

〈표 2-25〉 파주탄현 산업단지의 가동률(한국산업단지공단, 2018~2020)

(단위: %)

업종 연도	음식료	섬유 의복	목재 종이	석유 화학	비금속	철강	기계	전기 전자	운송 장비	기타	평균
2018.8	26.9	-	-	65.3	-	-	48.8	55.9	65.5	-	56.7
2019.8	24.6	-	-	48.7	-	-	46.8	72.9	92.7	-	54.8
2020.8	15.4	-	-	55.2	-	-	36.7	71.4	96.6	-	52.8

6. 경기도 국가산업단지의 파급효과 분석

- 경기도 국가산업단지의 업종별 입주업체 현황을 살펴본 결과 반월, 시화 및 파주탄현 산업단지는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며 시화MTV 및 파주출판 산업단지는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냄
 - 반월과 시화 산업단지의 입주업체의 감소 현황은 안산·시흥 지역의 인구수에도 영향을 준다고 볼 수 있으며 철강과 운송장비 업종의 경우 꾸준한 감소를 보이고 있으므로 해당 업종에 대한 경쟁력이 약화된 것으로 판단됨
- 경기도 국가산업단지의 업종별 생산실적 현황을 살펴본 결과 반월, 시화, 파주출판 및 파주탄현 산업단지는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며 시화MTV 산업단지는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냄
 - 반월, 시화, 파주출판 및 파주탄현 산업단지의 생산실적 감소는 전반적인 업종의 경쟁력이 하락되었다고 판단할 수 있으며 특히 그동안 산업단지의 많은 비중을 차지하던 업종인 기계, 전기전자, 철강, 목재종이, 석유화학 업종의 영세화가 가속화되고 있다고 예측할 수 있음
- 경기도 국가산업단지의 업종별 수출실적 현황을 살펴본 결과 반월 및 파주출판 산업단지의 경우 지속적인 감소를 보이고 있으며 특히 파주탄현 단지는 계속적으로 수출실적을 달성하고 있지 못하고 있음. 반면 시화 및 시화MTV 산업단지는 수출 실적이 2020년에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음
 - 반월 산업단지의 경우 섬유 의복, 철강, 기계, 전기전자 업종이 꾸준한 감소세를 유지하고 있는 바 주력 업종의 경쟁력이 하락하고 있다고 보여지며 이는 생산실적과 연관성이 있다고 보여짐
 - 시화 산업단지의 경우 섬유 의복과 전기전자 업종이 수출실적이 급격히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반월 산업단지에 비하여 업종의 경쟁력이 더 잘 나타나고 있음

- 경기도 국가산업단지의 업종별 고용현황을 살펴본 결과 반월, 시화, 파주출판 및 파주탄현 산업단지의 감소경향이 지속적으로 보여지고 있음. 시화MTV산업단지의 경우도 2020년에 소폭의 증가를 보여주었음
 - 반월 산업단지의 경우 음식료, 섬유 의복, 석유화학 등 여러 가지 업종에서 꾸준한 감소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이는 산업단지가 속해 있는 안산·시흥시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보여짐
 - 시화 산업단지의 경우 섬유 의복, 기계, 운송장비 등 여러 가지 업종에서 꾸준한 감소 추세를 보이는바 이는 영세 기업의 특성상 대규모 또는 지속적인 고용을 창출하는데 한계가 있음을 알 수 있음

- 경기도 국가산업단지 업종별 가동률 현황을 살펴보면 시화, 파주출판 및 파주탄현 산업단지의 경우 지속적인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반월과 시화MTV 산업단지의 경우도 2020년에 가동률의 하락을 보이고 있음
 - 가동률의 경우 산업단지의 생산실적, 수출실적, 고용현황 등 다양한 지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로 가동률을 높이기 위한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의 지원 사업 확대가 요구됨

제2절 경기도 산업단지 지원 조례

1. 경기도 산업단지 개발 지원 조례

[시행 2020. 1. 13.] [경기도조례 제6441호, 2020. 1. 13., 일부개정]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경기도 산업단지 개발 지원 조례)
-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농공단지(이하 “일반산업단지 등”이라 한다)의 조성과 관련하여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지정·승인·협의를 하는 산업단지에 적용한다.

제2장 경기도 산업단지개발지원센터

- 제3조(설치) 도지사는 일반산업단지등의 지정 및 개발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그 소속으로 산업단지개발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둔다.
- 제4조(구성) 지원센터의 장은 산업단지개발사업과 관련된 부서의 장이 되고 지원센터의 정원은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직원의 파견요청) 지원센터 구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인근 군부대의 장, 지방환경관리청장, 지방산림청장, 지방국토관리청장 등 산업단지의 지정과 관련된 기관의 장에게 소속 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인력지원의 기간 및 방법 등은 관계 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조정할 수 있다.

○ 제6조(기능)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 산업단지 투자방향서 접수, 문화재지표조사, 농지·산지 현황조사 등 개괄적인 입지타당성의 사전검토 및 조회
- 산업단지계획승인신청서 접수 및 산업단지계획 수립 또는 승인을 위한 관계 기관과의 협의
- 주민설명회 개최 및 후속조치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117조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 지정 검토
-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평가항목 범위선정 등 환경영향평가의 방향 설정에 관한 사항
- 기술검토서의 작성
- 그 밖에 산업단지 지정 및 개발에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 제7조(자문단 운영) ① 도지사는 산업단지의 지정과 관련된 업무를 보다 합리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지원센터에 관계 전문가로 산업단지개발 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자문단은 5명 이내의 관계 전문가로 구성하고, 도지사가 위촉한다.

제3장 경기도 지방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

○ 제8조(설치) 도지사는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제6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경기도 지방산업단지 계획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제9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도지사가 되며 부위원장은 제3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위원은 최소 구성 인원 이상으로 하되 어느 한 쪽의 성이 100분의 60을 넘지 않도록 위촉하여 한다.

- 경기도 소속 공무원 중 산업단지개발사업과 관련된 부서의 장 : 1명
- 도시계획, 산업입지, 건축, 교통, 환경 분야 등 산업단지 개발 관련 분야의 전문
가로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5명
-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 중 도시계획전문가, 설계전문가, 환경전문가 각
1명 이상을 포함하여 해당 위원회의 위원장이 추천하는 사람 : 3명
-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른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위원 중 해당 위원
회의 위원장이 추천하는 사람 : 2명
-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따른 에너지사용계획에 대하여 심의권한을 가진 위
원회의 위원 중 해당 위원회의 위원장이 추천하는 사람 : 2명
-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에 따른 국가교통위원회의 위원 중 해당 위원회의
위원장이 추천하는 사람 : 2명
- 「산지관리법」에 따라 산업단지 예정지역에 속한 산지의 이용계획에 대하여 심
의권한을 가진 해당 산지관리위원회의 위원 중 위원회의 위원장이 추천하는 사
람 : 2명
- 「경관법」에 따른 경기도 경관위원회의 위원 중 해당 위원회의 위원장이 추천
하는 사람 : 2명
- 산업단지개발 등과 관련된 경기도 소속 공무원
- 그 밖에 산업단지 개발에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 제10조(임기) ① 공무원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
다. 다만 제8조제3항제3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위촉한 위원의 임기는 소
속 위원회에서의 임기로 한다. ② 도지사는 위원의 개인사정 또는 품위손상 등 직
무수행에 어려움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 제11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
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
행하지 못하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 모두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
행한다.

- 제12조(회의 및 위원회의 제척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이를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은 회의에 부쳐진 안건의 입안에 직접적으로 관여하였거나 이해당사자일 때에는 위원회에 출석하거나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④ 위원이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회의에서 회피할 수 있으며 회의 개최일 3일전까지 간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13조(서면심의) ①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회의에 부쳐진 안건을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 위원회에서 심의한 사항 중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 회의를 소집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며 서면심의에 부치는 경우
 - 제1항에 따라 서면으로 심의·의결하는 때에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 제14조(자료의 제출요구 등) ① 위원회는 회의에 부쳐진 안건의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 기관 및 관련 공무원에게 자료 제출 및 설명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관계 기관 및 관련 공무원은 위원회의 요구에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제15조(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며, 간사는 위원회를 주관하는 부서의 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담당 사무관이 된다.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 제16조(회의록) ①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내용을 회의록으로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② 회의록은 원칙적으로 비공개하되, 위원회에서 공개하기로 의결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제17조(수당 등) 도지사는 예산의 범위에서 「경기도 위원회실비변상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여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제18조(비밀유지) 위원회의 위원과 제7조에 따라 자문단으로 위촉된 사람은 회의 및 직무수행으로 알게 된 사실을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장 사업시행자의 적정이윤

- 제19조(분양가격 결정 시 이윤율) 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0조제2항에 따라 법 제16조제1항제2호의2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자가 개발하는 산업시설용지의 적정이윤은 영 제40조제9항에 따른 조성원가에서 법 제5조에 따라 고시된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 제26조제6항 각 호의 비용을 제외한 금액의 100분의 10이하로 한다. ② 제1항의 적정이윤율의 조정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윤율을 결정한다.
- 제20조(건축사업의 적정이윤) 영 제40조의3제2항에 따른 건축사업의 적정이윤에 관하여는 조달청의 건축공사 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을 준용한다.
- 제2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2. 경기도 산업단지 및 공업지역 활성화 지원 조례

[시행 2019. 4. 29.] [경기도조례 제6126호, 2019. 4. 29., 전부개정]

-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 산업단지 및 공업지역의 기반시설 정비, 입주업체의 융복합화를 통한 고부가가치화 및 문화콘텐츠 등의 확충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산업단지”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제7조·제7조의2 및 제8조에 따라 지정·개발된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 산업단지 및 농공단지를 말한다.
 - “노후산업단지”란 공장건물, 도로, 상하수도, 녹지 등의 물리적 시설이나 환경이 낡고 부실화되어 산업활동기반으로서 본래의 기능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어려운 상태로서 착공 후 20년 이상 경과한 산업단지를 말한다.
 - “산업단지 구조고도화사업”이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 2조제11호의 사업을 말한다.
 - “공공시설”이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따른 공공시설과 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공동방지사설, 주차장, 운동장, 어린이집을 말한다.
 - “산업집적기반시설”이란 법 제2조제9호에 따른 연구개발시설, 기업 지원시설, 기술 인력의 교육·훈련시설 및 물류시설 등 산업의 집적을 활성화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
 - “산업기반시설”이란 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용수공급시설, 교통·통신 시설, 에너지시설, 유통시설 등 기업의 생산 활동에 필요한 기초적인 시설을 말한다.
 - “지식산업센터”란 동일 건축물에 제조업, 지식산업 및 정보통신산업을 영위하는 자와 지원시설이 복합적으로 입주할 수 있는 법 제2조제13호의 다층형 집합 건축물을 말한다.
 - “사업시행자”란 법 제45조의3제1항에 따른 구조고도화사업의 시행자를 말한다.
 - “인프라”란 산업단지를 지원하기 위한 교통·문화 등 기반시설을 말한다.

- “공업지역”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다목에 따른 공업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을 말한다.
 - “노후거점산업단지”란 「노후거점산업단지의 활력증진 및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단지를 말한다.
- 제3조(다른법령과의 관계) 산업단지 및 공업지역의 활성화에 관하여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도지사의 책무)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산업단지 및 공업지역의 구조고도화 등 활성화를 위하여 입주 업종의 고부가가치화, 산업집적기반시설, 산업기반시설의 확충, 재생활성화 계획, 인프라 확충 등 기업체 등의 유치를 촉진하고, 입주기업체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 제5조(실태조사 및 재생계획 수립) 도지사는 경기도 산업단지 및 공업지역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고, 재생활성화 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한다.
- 제6조(구조고도화 등 활성화 사업) 산업단지 및 공업지역의 구조고도화 등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한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산업단지 및 공업지역에 대한 경기도형 재생활성화계획사업 및 인프라 구축계획사업
 - 산업단지 및 공업지역의 업종 고부가가치화 및 산업재배치 사업
 - 산업기반시설·산업집적기반시설·공공시설 등의 유지·보수·개량 및 확충사업
 - 기업·연구소·대학 등의 유치, 산학융합 활성화 사업
 - 구조고도화사업 대상 산업단지 및 공업지역의 현황 및 경쟁력 분석, 발전전략 과제 수립 등 구조고도화 계획수립 사업
 - 교통 및 거주환경, 편익시설 등의 개량·확충 사업
 - 문화콘텐츠 개발·확산·홍보·행사 개최 지원 사업

- 교육, 자문, 공동판매 및 간담회 개최 등 입주기업체 및 그 관련 단체에 대한 지원 사업
 - 그 밖에 법 제2호제17호의 관리기관, 입주기업체 및 그 관련 단체에 대한 지원 과 산업단지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재생사업지구 내 녹지율 및 도로율)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 39조의1제2항에 따라 재생사업지구에 적용되는 녹지율 및 도로율은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 제14조에서 정하는 녹지율 및 도로율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범위에서 해당 재생사업지구의 여건을 고려하여 정한다.
- 제8조(위원회 심의)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경기도 산업단지 개발 지원 조례」 제8조에 따른 경기도지방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자문을 받아야 한다.
- 구조고도화 등 활성화 사업 관련 정책 및 사업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 구조고도화 등 활성화 사업에 대한 사업시행자 및 입주기업체 지원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도지사가 구조고도화 등 활성화 사업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9조(지방경쟁력강화추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경기도 지방경쟁력강화추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 노후거점산업단지 경쟁력강화 관련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시책
 - 「노후거점산업단지의 활력증진 및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법」 제 13조에 따른 노후거점산업단지 경쟁력강화 사업계획의 수립
 - 경쟁력강화사업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에 관한 사항
 - 제7조에 의한 재생사업지구 내 녹지율 및 도로율 조정 등 그 밖에 경쟁력강화사업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 ② 제1항에 따른 협의회 업무는 「경기도 산업단지 개발 지원 조례」 제9조에 따른 경기도지방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한다.

- 제10조(사업의 지원 등) ① 도지사는 제6조의 구조고도화 등 활성화 사업의 추진을 위해 필요한 행정·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경쟁력강화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공단이나 그 밖에 관리기관에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 제11조(지식산업센터의 지원) 도지사는 노후산업단지의 첨단산업 및 지식산업 유치를 통한 도시형 첨단산업단지의 발전을 꾀하기 위하여 지식산업센터 건설사업자 및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하는 기업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 제12조(입지지원) 도지사는 제6조의 구조고도화사업과 관련하여 산업용지의 취득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원할 수 있다.
- 제13조(사업시행자에 대한 지원) 도지사는 산업단지 및 공업지역의 구조고도화 추진을 위하여 법 제45조의5제2항 규정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시행하는 구조고도화사업 중 공공기설에 한정하여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으며, 노후산업단지 및 노후공업지역에 대해서는 산업기반시설에 대하여도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14조(사업의 위임 또는 위탁) 도지사는 산업단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산업단지관리공단에 관리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3절 경기도 산업단지 지원의 필요성

1. 4차 산업혁명의 도래와 제조혁신에 대한 요구

- 4차 산업혁명에서 요구되는 새로운 산업군은 제품과 서비스의 융합이 요구되는 산업이 주를 이루고 있음
 - 기존 중소기업의 대부분을 이루는 제조업과 현재 시대에 요구하는 ICT, IoT에 기반한 서비스업의 융합이 잘 이루어지지 않은 측면이 있음
 - 제조업-서비스업 간 융·복합을 통해 4차 산업혁명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공정의 효율화와 고부가가치 창출이 가능한 제조혁신을 요구하고 있음
 - 스마트 팩토리, 스마트 팜 등과 같이 4차산업혁명 시대에는 각 산업의 기기들이 서로 네트워크로 연결되는 스마트 시스템으로 전환이 요구되고 있음
 - 국가에서는 스마트 팩토리 지원사업을 꾸준히 진행중에 있으며 각 단계별로 다른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음
 - 이에 발맞추어 경기도에서 제조혁신을 이루기위한 다양한 방안들을 제공해야 함

2. 경기도의 대표 산업단지의 경쟁력 약화

- 경기도의 대표 제조업 산업단지로 반월·시화 산업단지의 경우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음
 - 산업은 첨단화되며 IT 기술이 산업의 깊숙이 자리하면서 제조업 중심의 산업의 역할과 기능이 축소되었음
 - 출산율이 저하되고 있으며 우수한 인력들은 제조업을 기피하는 현상이 계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 제조업의 일자리를 기피하거나 상대적으로 값이 싼 인건비를 위해 해외로 이전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3. 경기도 산업단지의 경제적 효과

○ 경기도 산업단지의 가동업체의 추이

- 전체 산업단지 대비 2018년 2분기에서 2020년 2분기까지 경기도 산업단지의 가동업체의 추이를 살펴보면 2018년 2분기(약 29.3%), 2019년 2분기(약 29.1%), 2020년 2분기(약 29.8%)로 조사되었음(한국산업단지공단)
- 경기도 산업단지는 3년(2018~2020)에 걸쳐 전체 산업단지 대비 평균 29.4%의 가동업체 비율을 보이고 있음

○ 경기도 산업단지의 고용의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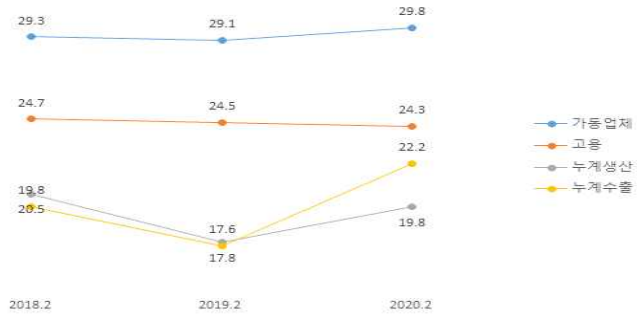
- 전체 산업단지 대비 2018년 2분기에서 2020년 2분기까지 경기도 산업단지의 고용의 추이를 살펴보면 2018년 2분기(약 24.7%), 2019년 2분기(약 24.5%), 2020년 2분기(약 24.3%)로 조사되었음(한국산업단지공단)
- 경기도 산업단지는 3년(2018~2020)에 걸쳐 전체 산업단지 대비 평균 24.5%의 고용 비율을 보이고 있음

○ 경기도 산업단지의 누계생산의 추이

- 전체 산업단지 대비 2018년 2분기에서 2020년 2분기까지 경기도 산업단지의 누계생산의 추이를 살펴보면 2018년 2분기(약 20.5%), 2019년 2분기(약 17.8%), 2020년 2분기(약 19.8%)로 조사되었음(한국산업단지공단)
- 경기도 산업단지는 3년(2018~2020)에 걸쳐 전체 산업단지 대비 평균 19.4%의 누계생산 비율을 보이고 있음

○ 경기도 산업단지의 누계수출의 추이

- 전체 산업단지 대비 2018년 2분기에서 2020년 2분기까지 경기도 산업단지의 누계수출의 추이를 살펴보면 2018년 2분기(약 19.8%), 2019년 2분기(약 17.6%), 2020년 2분기(약 22.2%)로 조사되었음(한국산업단지공단)
- 경기도 산업단지는 3년(2018~2020)에 걸쳐 전체 산업단지 대비 평균 19.9%의 누계수출 비율을 보이고 있음



<그림 2-1> 경기도 산업단지의 경제적 효과

- 이와 같이 경기도 산업단지가 차지하는 경제적 효과(고용, 생산, 수출 등)가 크므로 이를 지원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 연구가 필요함
- 경기도 산업단지는 고용, 생산, 수출의 높은 비율을 차지하며 국가와 지역경제에 상당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제 3 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산업단지 지원 법령 및 조례

여 백

제3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산업단지 지원 법령 및 조례

제1절 국가의 산업단지 지원 법령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 2020. 8. 28.] [법률 제 16568호, 2019. 8. 27., 타법개정]

- 제1장 ‘총칙’은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산업입지정책심의회), 제3조의2(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로 구성되어 있음
- 제2장 ‘산업입지개발지침’은 제4조(기초조사), 제5조(산업입지개발지침), 제5조의2(산업입지수급계획 등), 제5조의3(산업입지정보망의 구성·운영)로 구성되어 있음
- 제3장 ‘산업단지의 지정’은 제6조(국가산업단지의 지정), 제7조(일반산업단지의 지정), 제7조의2(도시첨단산업단지의 지정), 제7조의3(도시첨단산업단지의 지정특례), 제7조의4(산업단지 지정의 고시 등), 제8조(농공단지의 지정), 제8조의3(준산업단지의 지정), 제9조(공업지역 등의 활용), 제10조(주민 등의 의견청취), 제11조(민간기업 등의 산업단지 지정 요청), 제12조(행위 제한 등), 제13조(산업단지 지정의 해제), 제13조의2(산업단지의 전환), 제13조의3(산업단지의 통합), 제13조의4(준공된 산업단지의 개발행위에 관한 특례)로 구성되어 있음
- 제4장 ‘산업단지의 개발’은 제16조(산업단지개발사행의 시행자), 제16조의2(조합의 설립 등), 제17조(국가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 제17조의2(국가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의 변경), 제18조(일반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 제18조의2(도시첨단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 제19조(농공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 제19조의2(실시계획 승인의 고시 등), 제20조(산업단지개발사업의 위탁시행), 제20조

의2(산업단지의 신탁개발), 제21조(다른 법령에 따른 인·허가등의 의제 등), 제22조(토지수용), 제23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등의 적용특례), 제24조(토지소유자에 대한 환지), 제25조(타인의 토지에의 출입 등), 제26조(공공시설 및 토지등의 귀속), 제27조(국유지·공유지의 처분 제한 등), 제28조(비용의 부담), 제29조(기반시설 지원), 제29조의2(기반시설 지원에 대한 타당성 평가), 제29조의 3(국가산업단지 기반시설의 유지보수비 지원), 제30조(기존 공장의 존치 등), 제31조(산업단지 외의 사업에 대한 준용), 제32조(선수금), 제33조(시설 부담), 제34조(이의신청 등), 제35조(시설부담금의 부과·징수 및 납부 등), 제36조(이주대책 등), 제37조(개발사업의 준공인가), 제38조(개발한 토지·시설 등의 처분), 제38조의2(원형지의 공급과 개발), 제38조의3(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의 준수), 제38조의4(외국인을 위한 산업단지의 지정 등), 제38조의5(지방이전기업 전용 산업단지), 제38조의6(이전기업전용단지의 특례), 제39조(특수지역개발사업에의 준용)로 구성되어 있음

○ 제5장 ‘산업단지 등의 재생’은 제39조의2(재생사업지구의 지정), 제39조의3(재생사업지구 지정의 고시), 제39조의4(공장소유자 등의 의견청취), 제39조의5(재생사업지구 지정 요청), 제39조의6(재생사업의 시행방식), 제39조의7(재생시행계획의 승인), 제39조의8(토지소유자 등의 동의), 제39조의9(순화개발방식의 개발사업), 제39조의10(재생사업에의 준용), 제39조의11(재생사업지구 지정에 따른 산업단지 지정 의제 등), 제39조의12(재생사업 활성화구역의 지정), 제39조의13(활성화구역에 대한 특례), 제39조의14(입주기업 지원대책), 제39조의15(개발이익의 재투자), 제39조의16(토지거래 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의 지정), 제39조의17(재생사업 지원을 위한 특례), 제39조의18(재생사업의 총괄관리), 제39조의19(산업단지재생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영), 제39조의20(산업단지재생추진협의회 설립), 제39조의21(이의신청 등), 제39조의22(재생사업과 도시재생사업의 연계)로 구성되어 있음

○ 제6장 ‘산업단지 외 지역의 공장입지’는 제40조(입지지정 및 개발에 관한 기준), 제40조의2(공장입지 유도지구의 지정), 제40조의3(공장입지 유도지구의 특례), 제43조(유치지역 지정에 따른 산업단지개발)로 구성되어 있음

- 제7장 ‘보칙’은 제45조(조세 및 부담금의 감면), 제46조(자금 지원), 제46조의2(지원단지의 조성 등의 특례), 제46조의3(사립학교의 설립에 관한 특례), 제46조의4(학교 및 교육과정 운영의 특례), 제46조의5(북한지역의 공장입지의 개발 및 지원), 제46조의6(임대전용산업단지), 제46조의7(임대전용산업단지의 적용특례), 제46조의8(대학 교지의 일부를 포함하는 도시첨단산업단지의 개발 등에 관한 특례), 제47조(보고 및 검사 등), 제48조(감독), 제48조의3(항만건설에 관한 관계 기관 간의 협조), 제49조(권한의 위임), 제50조(관계 서류 등의 열람)로 구성되어 있음
- 제8장 ‘벌칙’은 제51조(벌칙), 제52조(양벌규정), 제53조(과징금)로 구성되어 있음

2.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시행 2020. 5. 12.] [법률 제 16999호, 2020. 2. 11., 일부개정]

- 제1장 ‘총칙’은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2조의2(다른 법률과의 관계)로 구성되어 있음
- 제2장 ‘산업기술단지의 조성등’은 제3조(산업기술단지 조성계획의 수립), 제4조(사업시행자의 지정), 제4조의2(사업시행자의 사업 등), 제5조(사업시행자의 지정신청 등), 제5조의2(사업시행자의 지정취소 등), 제6조(산업기술단지의 조성 절차), 제7조(산업기술단지의 운영지침), 제7조의2(경영실적 평가)로 구성되어 있음
- 제3장 ‘입지 공급의 원활화’은 제8조(공장설립 등에 대한 특례), 제9조(시설 등의 설치 및 입주 제한), 제10조(국유재산·공유재산의 매각 등), 제10조의2(무상임대의 취소), 제11조(시설비용의 지원), 제12조(건축 등에 대한 특례), 제13조(기반시설의 설치), 제14조(정보화 등의 추진), 제15조(전기시설 설치비용의 부담), 제16조(각종 부담금의 면제 등)로 구성되어 있음

- 제4장 ‘자금 공급의 원활화’는 제17조(국가·지방자치단체의 출연 등), 제18조(사립학교 등의 재산의 출연 등), 제19조(자금지원 등), 제20조(세제상의 지원)로 구성되어 있음
- 제5장 ‘인력 공급의 원활화’는 제21조(교육공무원 등의 휴직·겸직 허용), 제22조(기술지도 등)로 구성되어 있음
- 제5장의2 ‘사업시행자에 대한 관리·감독 등’은 제22조의2(정관의 승인 등), 제22조의3(임원의 구성), 제22조의4(이사회), 제22조의5(재산 및 회계), 제22조의6(인사·예산 등에 대한 감독), 제22조의7(검사 및 관리·감독 등)로 구성되어 있음
- 제6장 ‘보칙’은 제24조(권한의 위임·위탁), 제25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로 구성되어 있음

3. 노후거점산업단지의 활력증진 및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법

[시행 2020. 7. 30.] [법률 제 16904호, 2020. 1. 29., 타법개정]

- 제1장 ‘총칙’은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로 구성되어 있음
- 제2장 ‘경쟁력강화 추진체계’는 제5조(경쟁력강화추진위원회의 설치 등), 제6조(지방경쟁력강화추진협의회), 제7조(경쟁력강화지원기구의 지정), 제8조(경쟁력강화관계자협의회)의 설립)로 구성되어 있음
- 제3장 ‘경쟁력강화 전략계획 등’은 제9조(경쟁력강화 전략계획의 수립), 제10조(실태조사)로 구성되어 있음
- 제4장 ‘경쟁력강화사업지구 지정 및 사업시행 등’은 제11조(경쟁력강화사업지

구의 공모), 제12조(경쟁력강화사업지구의 지정), 제13조(경쟁력강화사업의 시행), 제14조(사업시행자), 제15조(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허가 등의 의제), 제16조(비용부담), 제17조(개발이익의 재투자 등), 제18조(경쟁력강화사업계정의 설치), 제19조(경쟁력강화사업계정의 운용), 제20조(총괄사업관리자), 제21조(경쟁력강화사업지구의 지정해제)로 구성되어 있음

- 제5장 ‘경쟁력강화를 위한 지원 및 규제특례’는 제22조(자금지원 등), 제23조(조세 및 부담금의 감면), 제24조(민간투자사업), 제25조(다른 법률에 대한 특례)로 구성되어 있음

제2절 경상북도의 산업단지 지원 조례

1. 경상북도 산업단지 개발 지원 조례

[시행 2016. 12. 29.] [경상북도조례 제3871호, 2016. 12. 29., 일부개정]

- 제1장 ‘총칙’ 은 제1조(목적), 제2조(적용 범위)로 구성되어 있음
- 제2장 ‘산업단지개발지원센터’ 는 제3조(설치), 제4조(구성), 제5조(지원센터의 장 등의 직무), 제6조(기능), 제7조(자문 등), 제8조(자문수당)로 구성되어 있음
- 제3장 ‘경상북도지방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 는 제9조(설치), 제10조(구성), 제11조(임기), 제12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13조(기능), 제14조(회의), 제15조(회의의 비공개), 제16조(위원의 제척·회피·위촉 해제), 제17조(간사와 서기), 제18조(회의록), 제19조(비밀유지), 제20조(수당 등), 제21조(운영세칙)로 구성되어 있음
- 제4장 ‘산업단지 개발, 분양 및 유지관리’ 는 제22조(분양가격 결정), 제23조(재생사업지구 내 도로율 및 녹지율 등), 제24조(산업단지내 폐기물처리시설 계획), 제25조(산업단지 입주우선순위 선정기준), 제26조(유지관리 등 지원), 제27조(관리 기관)로 구성되어 있음

2. 경상북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 2020. 4. 13.] [경상북도조례 제4316호, 2020. 4. 13., 일부개정]

- 제1장 ‘총칙’ 은 제1조(목적), 제2조(정의)로 구성되어 있음
- 제2장 ‘투자유치 지원체제’ 는 제3조(투자유치협의회), 제4조(투자유치진흥관), 제5조(민간전문가 활용)로 구성되어 있음

- 제3장 ‘외국인 투자의 지원’은 제6조(지방세 감면), 제7조(공유재산 임대 및 매각 특례), 제8조(입지지원), 제9조(고용보조금 지원), 제10조(교육훈련보조금 지원), 제11조(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현금지원), 제12조(외국인 생활환경 개선지원), 제13조(지원대상 외국인투자)로 구성되어 있음
- 제4장 ‘국내기업 투자의 지원’은 제14조(투자유치촉진지구 지정), 제15조(임대용지 공급), 제16조(고용보조금 지원), 제17조(연구개발인력 고용보조금 지원), 제18조(교육훈련보조금 지원), 제19조(입지시설보조금 등 현금지원), 제20조(이전보조금 지원), 제21조(국내기업 지원대상), 제22조(도내 기존기업의 투자에 따른 보조금 지원), 제23조(국비지원 기업에 대한 지원특례)로 구성되어 있음
- 제5장 ‘투자유치진흥기금 설치’는 제24조(투자유치진흥기금의 설치), 제25조(기금의 용도), 제26조(기금의 관리 및 운용), 제27조(기금운용 계획 등), 제28조(기금 관리공무원)로 구성되어 있음
- 제6장 ‘보칙’은 제29조(대규모 투자기업 등에 대한 특별지원), 제30조(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기업에 대한 지원), 제31조(관광사업 지원), 제32조(금융지원), 제33조(투자유치활동 등에 대한 지원), 제34조(외부전문가의 파견 요청 등), 제35조(투자기업의 사후관리), 제36조(지원금 등의 취소 및 반환), 제37조(중복지원의 금지), 제38조(포상), 제39조(시행규칙)로 구성되어 있음

3. 경상북도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20. 6. 4.] [경상북도조례 제4330호, 2020. 6. 4., 제정]

-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적용범위), 제4조(자원 조성), 제5조(사업 등), 제6조(사업비 지원), 제7조(공유재산의 임대 등), 제8조(사무의 위탁), 제9조(공무원의 겸임 등), 제10조(보고 및 검사), 제11조(시행규칙)로 구성되어 있음

제3절 광주광역시의 산업단지 지원 조례

1. 광주광역시 산업단지 개발 지원 조례

[시행 2015. 12. 28.] [광주광역시조례 제4669호, 2015. 12. 28., 전부개정]

- 제1장 ‘총칙’ 은 제1조(목적), 제2조(적용범위)로 구성되어 있음
- 제2장 ‘산업단지개발지원센터’ 는 제3조(설치), 제4조(구성), 제5조(기능), 제6조(센터장의 직무), 제7조(자문단 구성 등)로 구성되어 있음
- 제3장 ‘광주광역시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 는 제8조(설치), 제9조(구성), 제10조(임기), 제11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12조(간사와 서기), 제13조(회의), 제15조(회의의 비공개), 제16조(회의록), 제17조(수당), 제18조(비밀유지)로 구성되어 있음
- 제4장 ‘산업시설용지의 분양가격 및 건축사업 분양수익 이윤율 결정’ 은 제19조(산업시설 용지 분양가격 결정 시 이윤율), 제20조(산업단지 건축사업 분양수익 결정 시 이윤율)로 구성되어 있음
- 제5장 ‘산업단지 입주우선순위 선정기준’ 은 제21조(산업단지 입주우선순위 선정기준)로 구성되어 있음
- 제6장 ‘보칙’ 은 제22조(다른법령의 적용), 제23조(특별회계의 설치), 제24조(시행규칙)로 구성되어 있음

2. 광주광역시 산업단지 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

[시행 2019. 10. 15.] [광주광역시조례 제5272호, 2019. 10. 15., 일부개정]

- 제1조(목적), 제2조(명칭 및 위치), 제3조(사업), 제4조(사용허가 등), 제5조(대관료 감면), 제6조(관리·운영의 위탁), 제7조(위탁계약의 취소), 제8조(운영지원 등), 제9조(지도·감독), 제10조(시행규칙)로 구성되어 있음

3. 광주광역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 2020. 7. 6.] [광주광역시조례 제5496호, 2020. 7. 6., 일부개정]

- 제1장 ‘총칙’은 제1조(목적), 제2조(정의)로 구성되어 있음
- 제2장 ‘투자유치위원회 등의 설치·운영’은 제3조(투자유치위원회), 제4조(투자유치자문단), 제5조(해외 명예투자유치자문관 등), 제6조(관계기관 실무협의회 운영)로 구성되어 있음
- 제3장 ‘투자유치기업에 대한 지원’은 제7조(보조금 지원 특례 범위), 제8조(입지보조금의 지원), 제9조(설비투자보조금의 지원), 제10조(고용보조금의 지원), 제11조(교육훈련보조금의 지원), 제12조(지역선택보조금의 지원), 제13조(컨설팅보조금의 지원), 제13조의2(이주직원보조금의 지원), 제14조(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한 특별지원), 제15조(외국인 생활환경 개선 지원), 제16조(보조금의 결정)로 구성되어 있음
- 제4장 ‘투자유치기업의 사후관리’는 제17조(투자유치기업의 사후관리)로 구성되어 있음
- 제5장 ‘성과금의 지원기준’은 제18조(성과금 등 지급), 제19조(다른 규칙 등의 준용)로 구성되어 있음

제4절 대구광역시의 산업단지 지원 조례

1. 대구광역시 산업단지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 2020. 1. 1.] [대구광역시조례 제5310호, 2019. 8. 12., 일부개정]

-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세입), 제4조(세출), 제5조(잉여금의 처리), 제6조(예비비), 제7조(준용)로 구성되어 있음

2. 대구광역시 산업용지 확충 등에 관한 조례

[시행 2020. 1. 1.] [대구광역시조례 제5309호, 2019. 8. 12., 일부개정]

- 제1장 ‘총칙’은 제1조(목적), 제2조(정의)로 구성되어 있음
- 제2장 ‘산업용지의 확충 등’은 제3조(산업입지심의회), 제4조(산업단지 입주우 선순위 선정방법의 특례), 제4조의2(산업단지 및 기존공업지역 재생사업 지원)로 구성되어 있음
- 제3장 ‘대구광역시산업단지개발지원센터’는 제5조(구성), 제6조(지원센터의 장의 직무), 제7조(간사 등), 제8조(회의)로 구성되어 있음
- 제4장 ‘대구광역시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는 제9조(구성), 제10조(임기), 제11조(위원장의 직무), 제12조(회의), 제13조(간사 및 서기), 제14조(위원의 제척 등), 제15조(운영세칙)로 구성되어 있음
- 제5장 ‘대구광역시산업단지재생추진협의회’는 제16조(설립), 제17조(구성), 제18조(위원의 해촉), 제19조(위원장의 직무), 제20조(회의), 제21조(간사), 제22조(운영세칙)로 구성되어 있음

- 제6장 ‘산업시설용지 분양가격 결정’은 제23조(산업시설용지 분양가격 결정 시 이윤율), 제24조(산업단지 건축사업 분양수익 산정 시 적정이윤의 적용)로 구성되어 있음
- 제7장 ‘보칙’은 제25조(관계기관 등과의 협조요청), 제26조(수당), 제27조(비밀 유지)로 구성되어 있음

3. 대구광역시 기업유치촉진 조례

[시행 2019. 1. 1.] [대구광역시조례 제5169호, 2018. 10. 30., 일부개정]

-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기업유치 의무), 제4조(기업유치촉진지역의 지정), 제5조(산업시설용지 등의 지원), 제5조의2(임대용 토지의 취득), 제6조(시설비 등 보조금 지원), 제7조(금융 지원), 제8조(민원의 처리), 제9조(고용보조금 등의 지원), 제9조의2(외국인 투자환경 개선시설에 대한 지원), 제9조의3(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한 특별지원), 제10조(기업유치위원회의 설치), 제11조(유치위원회의 구성 등), 제12조(위원장의 직무 등), 제13조(회의), 제14조(유치기업평가위원회의 설치), 제15조(평가위원회의 구성 등), 제16조(위원장의 직무 등), 제17조(회의), 제18조(수당 등), 제18조의2(경비지원 등), 제18조의3(외국인투자진흥관), 제18조의4(민간 전문가의 파견근무), 제18조의5(투자유치자문관 위촉 등), 제19조(사후관리), 제19조의2(지원등의 취소 및 반환 등), 제20조(포상금 등), 제21조(다른 조례의 적용), 제21조의2(비밀유지 및 회의의 비공개), 제22조(시행규칙)로 구성되어 있음

제5절 인천광역시의 산업단지 지원 조례

1. 인천광역시 산업단지 개발 지원 조례

[시행 2019. 6. 3.] [인천광역시조례 제6153호, 2019. 6. 3., 일부개정]

- 제1장 ‘총칙’ 은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적용범위)로 구성되어 있음
- 제2장 ‘산업입지심의회’ 는 제4조(기능), 제5조(구성)로 구성되어 있음
- 제3장 ‘산업시설용지 분양가격 결정 등’ 은 제6조(산업단지 입주우선순위 선정 방법의 특례), 제7조(재생사업지구 내 녹지율 및 도로율), 제8조(산업시설용지 분양가격 결정 시 이윤율), 제9조(산업단지 건축사업 분양수익 산정 시 적정이윤의 적용)로 구성되어 있음
- 제4장 ‘인천광역시 산업단지개발지원센터’ 은 제10조(설치), 제11조(구성), 제12조(운영)로 구성되어 있음
- 제5장 ‘인천광역시 사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 는 제13조(구성), 제14조(위원장 직무), 제15조(간사와 서기), 제16조(위원의 제척), 제17조(운영세칙)로 구성되어 있음
- 제6장 ‘보칙’ 은 제18조(의견청취 등), 제19조(비밀누설금지), 제20조(수당), 제21조(시행규칙)로 구성되어 있음

2. 인천광역시 노후산업단지 구조고도화 지원 조례

[시행 2018. 10. 8.] [인천광역시조례 제5984호, 2018. 10. 8., 일부개정]

-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적용범위), 제4조(시장의 책무), 제5조(구조고도화 사업), 제6조(위원회 설치), 제7조(위원회 기능), 제8조(위원회 구성), 제9조(회의), 제10조(의견청취 등), 제11조(회의의 비공개 등), 제12조(분과위원회), 제13조(위원의 해촉), 제14조(수당), 제15조(사업의 지원), 제16조(지식산업센터의 확산), 제17조(입지지원), 제18조(사업시행자에 대한 지원), 제19조(시행규칙)로 구성되어 있음

3. 인천광역시 지역산업육성에 관한 조례

[시행 2020. 3. 30.] [인천광역시조례 제6361호, 2020. 3. 30., 일부개정]

-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지역산업육성계획 수립), 제4조(사업지구 지정계획), 제5조(사업지구 지정), 제6조(지정기준), 제7조(사업지구 지정 심의), 제8조(사업지구 지정고시 및 공람), 제9조(지정의 실효), 제10조(기반시설 우선설치), 제11조(입지지원), 제12조(금융지원), 제13조(행정지원), 제14조(위원회 설치와 기능), 제15조(구성과 운영), 제16조(회의), 제17조(소위원회), 제18조(수당), 제19조(운영세칙), 제20조(시행규칙)로 구성되어 있음

4. 인천광역시 외국인 투자유치 및 지원 조례

[시행 2020. 3. 30.] [인천광역시조례 제6362호, 2020. 3. 30., 일부개정]

- 제1장 ‘총칙’ 은 제1조(목적), 제2조(정의)로 구성되어 있음
- 제3장 ‘외국인투자유치협의회 등’ 은 제7조(외국인투자유치협의회 설치 및 운영), 제8조(협의회의 기능)로 구성되어 있음

- 제4장 ‘외국인투자에 대한 지원’은 제11조(외국인투자지역에 대한 지원), 제12조(지방세의 감면), 제13조(금융지원), 제13조의2(외국인투자자에 대한 현금지원), 제14조(입지 보조금 지원), 제15조(시설 보조금 지원), 제16조(교육훈련 보조금 지원), 제17조(고용보조금 지원), 제18조(외국인투자환경개선시설 등에 대한 지원), 제19조(외국인투자자와 관련된 민원처리의 특례), 제20조(공유재산임대 및 매각특례), 제21조(사회기반시설에 대한 외자유치촉진), 제21조의2(투자환경 조성)로 구성되어 있음
- 제5장 ‘보칙’은 제22조(민간조직의 활용), 제23조(민간기관의 파견근무), 제24조(외국인투자유치 실적보상), 제25조(시행규칙)로 구성되어 있음

제6절 전라남도의 산업단지 지원 조례

1. 전라남도 산업단지 개발 지원 조례

[시행 2017. 3. 16.] [전라남도조례 제4196호, 2017. 3. 16., 일부개정]

- 제1장 ‘총칙’은 제1조(목적), 제2조(적용범위)로 구성되어 있음
- 제2장 ‘산업단지개발지원센터’는 제3조(설치 및 구성), 제4조(기능), 제5조(지원센터장 등의 직무), 제6조(자문 등), 제7조(예산편성 등), 제8조(포상)로 구성되어 있음
- 제3장 ‘전라남도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는 제9조(설치), 제10조(기능), 제11조(구성), 제12조(임기), 제13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14조(간사와 서기), 제15조(회의), 제16조(위원의 제척 등), 제17조(자료요청 등), 제18조(회의의 비공개), 제19조(회의록), 제20조(수당 등), 제21조(위원회 운용 및 심의 규정)로 구성되어 있음
- 제4장 ‘산업시설용지의 분양’은 제22조(분양가격 결정 시 이윤율), 제23조(산업시설용지의 우선분양)로 구성되어 있음
- 제5장 ‘산업단지 등의 재생사업 지원’은 제24조(재생사업지구 녹지율 및 도로율 등)로 구성되어 있음
- 제6장 ‘보칙’은 제18조(의견청취 등), 제19조(비밀누설금지), 제20조(수당), 제21조(시행규칙)로 구성되어 있음

2. 전라남도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 2017. 12. 14.] [전라남도조례 제4539호, 2017. 12. 14., 일부개정]

- 제1조(목적), 제2조(세입과 세출), 제3조(준용규정), 제4조(시행규칙), 제5조(특별회계 존속기한)로 구성되어 있음

3. 전라남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 2020. 10. 8.] [전라남도조례 제5138호, 2020. 10. 8., 일부개정]

- 제1장 ‘총칙’은 제1조(목적), 제2조(정의)로 구성되어 있음
- 제2장 ‘투자유치 지원체제’는 제3조(투자유치협의회), 제3조의2(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3조의3(위원의 해촉), 제4조(투자유치자문관)로 구성되어 있음
- 제3장 ‘외국인투자에 대한 지원’은 제5조(지방세 감면), 제6조(입지 지원), 제7조(시설보조금 지원), 제8조(고용보조금 지원), 제9조(교육훈련보조금 지원), 제10조(외국인 생활환경개선사업 지원), 제11조(공유재산 임대 및 매각특례), 제12조(컨설팅비용 지원), 제13조(지원대상 외국인 투자의 범위), 제14조(외국인투자에 대한 현금지원), 제15조(외국인투자지역에 대한 지원)로 구성되어 있음
- 제4장 ‘국내기업 투자지원’은 제16조(국내기업 지원의 준용), 제17조(국내기업에 대한 공유재산 임대 및 매각특례 등), 제18조(수도권기업 등의 도내 이전비 지원)로 구성되어 있음
- 제5장 ‘보칙’은 제19조(민간기관의 파견근무), 제20조(보조금 지원한도), 제21조(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한 특별지원), 제22조(시·군의 투자기업유치에 대한 보조금 지원 등), 제23조(투자기업의 사후관리 등), 제24조(지원의 취소 및 반환 등), 제25조(기업 및 자본유치 실적보상), 제26조(권한의 위임), 제27조(시행규칙)로 구성되어 있음

제7절 경기도 및 타 지방자치단체의 산업단지 지원 조례 비교

1. 지원 조례의 비교

- 경기도는 산업단지와 관련하여 「경기도 산업단지 개발 지원 조례」, 「경기도 산업단지 및 공업지역 활성화 지원 조례」, 「경기도 외국인투자 촉진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였음
- 경상북도는 「경상북도 산업단지 개발 지원 조례」, 「경상북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경상북도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였음

<표 3-1> 경기도와 경상북도의 산업단지 지원 조례 비교

경기도 지원 조례	경상북도 지원 조례	차별점
• 경기도산업단지 개발 지원 조례 • 경기도 산업단지 및 공업지역 활성화 지원 조례 • 경기도 외국인투자 촉진 등에 관한 조례	• 경상북도 산업단지 개발 지원 조례 • 경상북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 경상북도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조례	• 경상북도의 경우 '산업기술단지'를 특화하여 지원 조례를 제정하였음

- 광주광역시 「광주광역시 산업단지 개발 지원 조례」, 「광주광역시 산업단지 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 「광주광역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를 제정하였음

<표 3-2> 경기도와 광주광역시의 산업단지 지원 조례 비교

경기도 지원 조례	광주광역시 지원 조례	차별점
• 경기도산업단지 개발 지원 조례 • 경기도 산업단지 및 공업지역 활성화 지원 조례 • 경기도 외국인투자 촉진 등에 관한 조례	• 광주광역시 산업단지 개발 지원 조례 • 광주광역시 산업단지 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 • 광주광역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	• 광주광역시의 경우 산업단지 지원센터를 설립 및 운영에 관련한 조례를 제정하였음

- 대구광역시는 「대구광역시 산업단지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대구광역시 산업용지 확충 등에 관한 조례」, 「대구광역시 기업유치촉진 조례」를 제정하였음

<표 3-3> 경기도와 대구광역시의 산업단지 지원 조례 비교

경기도 지원 조례	대구광역시 지원 조례	차별점
- 경기도산업단지 개발 지원 조례 - 경기도 산업단지 및 공업지역 활성화 지원 조례 - 경기도 외국인투자 촉진 등에 관한 조례	- 대구광역시 산업단지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 대구광역시 산업용지 확충 등에 관한 조례 - 대구광역시 기업유치촉진 조례	대구광역시의 경우 산업단지 특별회계를 설치 및 운용과 관련한 조례를 제정하였음

- 인천광역시는 「인천광역시 산업단지 개발 지원 조례」, 「인천광역시 노후산업단지 구조고도화 지원 조례」, 「인천광역시 지역산업육성에 관한 조례」, 「인천광역시 외국인 투자유치 및 지원 조례」를 제정하였음

<표 3-4> 경기도와 인천광역시의 산업단지 지원 조례 비교

경기도 지원 조례	인천광역시 지원 조례	차별점
- 경기도산업단지 개발 지원 조례 - 경기도 산업단지 및 공업지역 활성화 지원 조례 - 경기도 외국인투자 촉진 등에 관한 조례	- 인천광역시 산업단지 개발 지원 조례 - 인천광역시 노후사업단지 구조고도화 지원 조례 - 인천광역시 지역산업육성에 관한 조례 - 인천광역시 외국인 투자유치 및 지원 조례	인천광역시의 경우 지역산업육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였음

○ 전라남도는 「전라남도 산업단지 개발 지원 조례」, 「전라남도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라남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를 제정하였음

<표 3-5> 경기도와 전라남도의 산업단지 지원 조례 비교

경기도 지원 조례	전라남도 지원 조례	차별점
- 경기도산업단지 개발 지원 조례 - 경기도 산업단지 및 공업지역 활성화 지원 조례 - 경기도 외국인투자 촉진 등에 관한 조례	- 전라남도 산업단지 개발 지원 조례 - 전라남도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 전라남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전라남도의 경우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하였음

제 4 장

국내 지방자치단체의 산업단지 지원 사례

여 백

제4장 국내 지방자치단체의 산업단지 지원 사례

제1절 경상북도 산업단지 지원 사례

1. 지원정책의 개요

- 주력업종은 전기전자, 화학, 기계의 3가지 업종으로 선정하였음
- 비전 및 목표는 전자산업의 고부가화와 초소형 전기차 소재부품의 글로벌 리딩의 수출기지를 부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구미국가 산업단지를 거점단지로 하여 연계단지는 김천1일반산업단지, 왜관일반산업단지, 성주일반산업단지가 대상이 되었음
- 제조혁신 및 투자활성화, 산단 내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 산단인프라 개선 및 경제권 정비 및 신산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선의 4가지 추진전략에 따른 주요 사업은 <표 4-1>과 같음

<표 4-1> 경상북도 주요 사업(국토교통부 보도자료, 2020.5.7)

추진 전략	주요 사업
제조혁신 및 투자활성화	• 스마트산업단지 제조혁신기반 구축 • G-focus 전문기업의 육성사업(융합소재부품분야) • 미래차용 이차전지 소재부품 장비의 R&D 혁신복합 지원센터 설립
산단 내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	• 청년 중심 체험형 복합문화 클러스터 • 산업단지 맞춤형 인재양성 • 성별균형 포용성장 맞춤형 기업컨설팅 • 스마트팩토리 전문인력 양성
산단인프라 개선 및 경제권 정비	• 노후산단 재정비 • 통합 안전망 구축 • 공유형 스마트 교통체계 도입
신산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선	• 신산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자유특구 조성

2. 혁신계획의 구성

- 전자산업의 고부가화와 미래차 소재·부품·완차 산업구조를 형성하여 초격차 품목(전장부품)의 경쟁력 강화를 기반으로 협력형 제조업 연결망 구축을 구상함
- 전기전자 거점인 구미산업단지, e-모빌리티가 중심인 김천1산업단지, 뿌리기업 중심의 차량부품이 중심인 성주산업단지 및 스마트 물류가 중심인 왜관산업단지 가 중심이 됨
- 구미산업단지와 김천1산업단지 간 연계협력을 통한 ‘대중소 상생형 초소형 전기차 부품 및 완성차 개발’로 국내외 전기차 핵심부품 시장을 선점하는 것을 목표로 함



<그림 4-1> 경상북도 혁신계획 구성(국토교통부 보도자료, 2020.5.7)

제2절 광주광역시 산업단지 지원 사례

1. 지원정책의 개요

- 주력업종은 광·전자 및 자동차의 2가지 업종으로 선정하였음
- 광·가전 및 자동차전장부품산업 융합을 통해 새로운 자동차 산업 생태계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음
- 첨단국가산업단지를 거점단지로 하여 연계단지는 하남일반산업단지, 빛그린국가산업단지를 대상으로 하였음
- 스마트 혁신, 스마트 환경 및 스마트 인재의 3가지 추진전략에 따른 주요 사업은 <표 4-2>와 같음

<표 4-2> 광주광역시 주요 사업(국토교통부 보도자료, 2020.5.7)

추진 전략	주요 사업
스마트 혁신	• 스마트 산업단지 제조혁신 기반 구축 • 핵심부품 및 모듈의 양산성능평가 및 개선 지원 • 제조온라인 서비스바우처 • 선도시험 스마트팩토리 구축
스마트 환경	• 복합문화센터 건립 • 아름다운 거리 조성 • 스마트 편의시설 확충 • 공장에너지관리시스템의 구축 • 산업단지 자율주행 교통시스템 구축 • 에너지 리빙랩 조성
스마트 인재	• 스마트제조 고급인력양성 • 스마트공장 특화캠퍼스 구축 • 산업단지형 공동 훈련센터의 구축 • 산업단지 온라인 시면접서비스 바우처

2. 혁신계획의 구성

- 전장부품 및 전장모듈 공급이 중심인 첨단국가산업단지외 밸류체인을 형성하였으며 자동차산업과 연관성이 빛그린국가산업단지외 하남일반산업단지를 선정하였음
- 첨단산업단지의 ICT기반 전장융합 업종의 집적으로 자동차 전장부품의 선도 스마트 산업단지로 도약을 목적으로 함



<그림 4-2> 광주광역시 혁신계획 구성(국토교통부 보도자료, 2020.5.7)

제3절 대구광역시 산업단지 지원 사례

1. 지원정책의 개요

- 주력업종은 기계금속 및 운송장비의 2가지 업종으로 선정하였음
- 전기자동차 부품, 섬유신소재 개발, 로봇산업 육성 등 제조혁신을 통한 미래형 산업단지 구현을 목표로 함
- 성서일반산업단지를 거점단지로 하여 서대구일반산업단지, 대구제3일반산업단지를 연계단지를 선정하고 북구혁신경제벨트를 연계지역으로 지정하였음
- 제조공정혁신 기반 기업지원 및 창업,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 및 안전하고 편안한 산업단지 조성의 3가지 추진전략에 따른 주요 사업은 <표 4-3>과 같음

<표 4-3> 대구광역시 주요 사업(국토교통부 보도자료, 2020.5.7)

추진 전략	주요 사업
제조공정혁신 기반 기업지원 및 창업	• 제조로봇 선도보급의 실증 • 스마트공장 구축 및 고도화 • 휴폐업공장의 리모델링 • 섬유소재부품의 기술혁신 테스트베드 구축 • 이동식 협동로봇의 규제자유특구 • 혁신창업생태계 실현 • 부직포소재실증지원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	• 캠퍼스 혁신파크의 조성 • 스마트제조업의 고급인력 양성 • 복합문화센터 건립 • 스마트 휴부스 조성 • 스마트 공장 특화 캠퍼스 조성 • 스마트가든볼 조성

제4절 인천광역시 산업단지 지원 사례

1. 지원정책의 개요

- 주력업종은 기계, 전기전자, 바이오 3가지 업종으로 선정하였음
- 비전 및 목표는 Post-코로나 대응과 소부장 산업의 육성 등 미래의 선도 산업단지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함
- 남동국가 산업단지를 거점단지로 하여 연계단지는 한국수출(부평·주안)국가 산업단지와 송도지식 정보일반단지가 대상이 되었으며 송도경제자유구역은 연계지역으로 선정하였음
- 제조혁신 생태계 육성, 좋은 일자리 창출, 사람 중심의 공간 혁신의 3가지 추진 전략에 따른 주요 사업은 <표 4-4>과 같음

<표 4-4> 인천광역시 주요 사업(국토교통부 보도자료, 2020.5.7)

추진 전략	주요 사업
제조혁신 생태계 육성	• 소재·부품·장비 등의 실증센터 구축 • 5G 스마트공장의 고도화 • 바이오 원부자재 개발지원 • 뿌리기업의 맞춤형 공정환경개선 지원
좋은 일자리 창출	• 고용안전을 위한 선제대응 패키지 지원사업 • 스마트제조업의 고급인력 양성 • 복합문화센터의 설립 • 산단 새일센터의 지정 운영
사람 중심의 공간 혁신	• 산업단지형 스마트시티 • 스마트시티 연계통합관제센터의 구축 • 산업단지 재생사업 • 산업단지 AI융합 에너지 효율화 사업

2. 혁신계획의 구성

- 거점 산업단지인 남동국가산업단지를 중심으로 첨단 소재부품장비 및 바이오산업 글로벌 가치 사슬 조성을 위하여 주력산업과 연관성이 높은 한국수출(부평·주안)국가 산업단지와 송도지식 정보일반단지를 선정하였음
- 기존의 기계 및 자동차 등 주력산업의 소재·부품·장비의 공급망을 ICT, 미래차, 첨단기계장비 등으로 고도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남동국가산업단지, 한국수출(부평·주안)국가 산업단지 및 송도지식 정보일반단지와 지역 내 선도 기업과의 연계를 통한 바이오 헬스케어 IT융합으로 글로벌 클러스터를 조성하였음



<그림 4-4> 인천광역시 혁신계획 구성(국토교통부 보도자료, 2020.5.7)

제5절 전라남도 산업단지 지원 사례

1. 지원정책의 개요

- 주력업종은 화학 및 철강의 2가지 업종으로 선정하였음
- 이차전지 및 플랜트 산업을 연계하여 저탄소 지능형 소재부품의 산업단지를 목표로 함
- 여수국가산업단지를 거점단지로 하여 광양국가산업단지, 울촌1일반산업단지를 연계단지를 선정하고 여수와 광양항 항만부지를 연계지역으로 지정하였음
- 일자리 창출, 일자리 매칭 및 산업단지 인프라의 3가지 추진전략에 따른 주요 사업은 <표 4-5>과 같음

<표 4-5> 전라남도 주요 사업(국토교통부 보도자료, 2020.5.7)

추진 전략	주요 사업
일자리 창출	• 산업집적지 경쟁력의 강화 • 스마트공장의 구축 • ICT기반 금속소재 및 부품 솔루션 테스트베드 • 첨단소재 융합제품 상용화 기반강화사업
일자리 매칭	• 스마트제조 고급인력양성 • 복합문화센터의 건립 • 지역특화 인력 양성 • 소재·부품·장비 분야의 기업 인재 육성 • 산업단지 안전교육을 위한 통합센터 구축
산업단지 인프라	• 산업단지형 행복주택의 건립 • 산업단지 생활권의 재생 • 노후거점산업단지의 경쟁력 강화 • 안전한 저탄소 산업단지 개조를 위한 자원 통합 연계시스템 기반의 구축

2. 혁신계획의 구성

- 전방산업을 육성, 안전강화, 오염물질 및 온실가스의 저감 및 물류 경쟁력 강화에 근거한 차별성 확보
- 화학·철강 산업과 연계한 이차전지 등 차세대 소재·부품산업의 육성
- 스마트 산업단지 구현을 통한 환경·안전·교통·물류의 통합 관리
- 여수·광양항의 항만부지 개발을 통한 지능형 항만물류를 육성하고 창업 촉진을 통한 혁신창출 및 근로자 편의·정주환경의 개선



<그림 4-5> 전라남도 혁신계획 구성(국토교통부 보도자료, 2020.5.7)

제6절 산업단지 지원 사례의 시사점

1. 지원정책의 개요

○ 지역의 특성에 맞는 주력업종을 선정하였음

- 주력업종으로 경상북도 지역은 전기전자, 화학, 기계, 광주광역시는 광·전자 및 자동차, 대구광역시는 기계금속 및 운송장비, 인천광역시는 기계, 전기전자, 바이오, 전라남도는 화학 및 철강으로 선정하였음
- 경기도 지역의 경우 시화산업단지, 반월산업단지, 시화MTV산업단지, 파주출판산업단지, 파주탄현산업단지 및 아산산업단지가 국가산업단지로 지정되어 있으며 경기도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주력업종을 국가산업단지에서 선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임

○ 비전과 목표를 명확하게 제시함

- 비전과 목표는 주력업종의 산업의 방향성을 제시하거나 나아가고자 하는 산업단지의 모습을 제시하고 있음
- 경기도 지역의 주력업종이 4차산업혁명 이후 나아가야할 방향을 제시하거나 새롭게 구현하고자 하는 산업단지의 모습을 제시하는 것이 필요함

○ 거점단지, 연계단지 및 연계지역을 적절하게 선정함

- 대부분 국가산업단지를 거점단지로 하여 연계단지는 거점단지와 연관성 있는 산업의 단지를 선정하였으며 연계지역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포함하여 제시하였음
- 경기도의 거점단지는 입주업체의 수, 생산실적, 수출실적, 고용 등의 현황이 높은 반월·시화 산업단지가 주축이 되어 선정하는 것이 필요하며 주력 업종인 기계, 전기전자, 석유화학과 연관되는 산업단지를 연계단지로 선정하는 것이 필요함

○ 추진 전략에 따른 주요 사업을 제시함

- 각 지역은 해결하고자 하는 목표를 전략으로 설정하여 이에 해당하는 주요 사업을 나열하였음
- 경기도의 추진 전략으로 제조혁신 생태계 육성, 일자리 창출, 제조공정혁신 기반 기업지원 및 창업 등의 전략이 있을 수 있으며 이에 해당하는 다양한 사업들을 제시하는 것이 필요함

2. 혁신계획의 구성

○ 거점산업단지와 연계산업단지는 거래의 용이성, 접근의 용이성, 정책효과성 등의 다양한 요소가 만족하는 산업단지를 선정하였음

- 경기도의 거점산업단지와 연계산업단지는 접근의 용이성, 산업의 연관성, 차별성 등에 근거하여 산업단지를 선정하는 것이 필요함

제 5 장

경기도 산업단지 지원방안

여 백

제5장 경기도 산업단지 지원방안

제1절 경기도 산업단지 지원을 위한 조례(안)

1. 경기도 산업단지 지원을 위한 조례(안)의 검토

- 경상북도의 경우 「경상북도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도내에 조성되는 산업기술단지의 운영과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음
 - 산업기술단지에 한정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경기도 산업단지 전체를 위한 조례로 적절치 않은 것으로 판단하였음
- 광주광역시의 경우 「광주광역시 산업단지 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하여 중소기업의 기업활동 지원 및 근로자의 권익신장과 복지향상을 지원하도록 하였음
 - 경기도는 「경기도 산업단지 개발 지원 조례」에서 ‘산업단지개발지원센터’를 설치 및 구성하는 요건을 제시하고 있으나 산업단지 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과 관련한 조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보임
- 대구광역시의 경우 「대구광역시 산업단지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제정하여 산업단지의 조성, 관리, 재생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하였음
 - 경기도는 산업단지회계와 관련된 조례가 제정되지 않았으므로 산업단지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산업단지회계 조례가 제정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임
- 인천광역시의 경우 「인천광역시 지역산업육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산업의 활성화 및 경쟁력을 제고하여 공장지역의 도시환경개선을 추진하고자 하였음
 - 지역산업육성은 산업단지보다는 산업에 초점을 맞추어진 개념으로 경기도 산업단지 지원 조례로 적절치 않은 것으로 판단되었음

- 전라남도의 경우 「전라남도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하여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의 합리적인 추진을 하고자 하였음
- 경기도는 산업단지회계와 관련된 조례가 제정되지 않았으므로 산업단지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산업단지회계 조례가 제정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이나 일반산업단지에 국한되어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으로 판단되었음

2. 경기도 산업단지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

-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의 산업단지 조성, 관리, 재생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 126조 및 「지방재정법」 제9조에 따라 경기도 산업단지특별회계의 설치와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산업단지 조성”이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농공단지를 계획에 따라 지정·개발하는 것을 말한다.
 - “산업단지 관리”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5호에 따른 산업단지의 용지 및 시설의 매각·임대 및 사후관리, 기반시설의 설치·유지·보수 및 개량, 입주 기업체 및 지원기관의 사업활동 지원 등을 말한다.
 - “산업단지 재생”이란 재생사업지구에서 산업입지기능을 발전시키고 기반시설과 지원시설 및 편의시설을 확충·개량하기 위한 사업을 말한다.
 - “산업단지 재생사업지구”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9조의2 및 제39조의3에 따라 지정·고시된 경기도 관할구역에 위치한 산업단지를 말한다.

- 제3조(세입) 경기도 산업단지특별회계(이하 “산업단지특별회계”라 한다)의 세입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한다.
 - 산업단지조성부지 매각 수익금
 -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건축부담금 중 지방자치단체 귀속분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9조의15에 따른 개발이익재투자를 위한 환수금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3조제8항에 따른 지가상승분의 기부금
 - 일반회계 전입금
 - 사업선수금
 - 국비보조금
 - 지방채 및 차입금
 - 산업단지특별회계 자금의 융자회수금, 이자수익금 및 그 밖의 수익금
 - 기타 목적사업을 위한 특별회계에서의 전입금
- 제4조(세출) 산업단지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 산업단지 조성 및 관리 사업과 관련된 보상
 - 산업단지 조성 및 관리를 위한 부대시설 건설비용
 - 산업단지 내 공공시설 설치비용
 - 산업단지 재생사업을 위한 조사·연구비
 - 산업단지 재생계획 및 재생시행계획의 수립 비용
 - 산업단지 재생사업지구 내 기반시설 정비 비용
 - 산업단지 재생시행계획에 따른 재생사업을 위한 자금 지원
 - 산업단지특별회계의 조성·운용 및 관리를 위한 경비
 - 지방채 및 차입금의 상환
 - 그 밖에 산업단지 조성, 관리, 재생 사업과 관련되는 비용
- 제5조(잉여금의 처리) 산업단지특별회계의 결산상 잉여금은 다음 연도의 세입으로 한다.

- 제6조(예비비) 산업단지특별회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상당한 금액의 예비비를 세출예산에 계사할 수 있다.
- 제7조(준용) 산업단지특별회계의 관리 및 운용에 있어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제2절 경기도 산업단지 개발을 위한 모델(안)

1. 지원정책의 개요

- 주력업종은 기계, 전기전자의 2가지 업종으로 선정하였음
- 전자산업의 고부가화와 산업단지의 구조고도화를 통한 업종의 첨단화를 이끌어 내어 미래의 선도 산업단지 구축을 목적으로 함
- 반월국가산업단지를 거점단지로 하여 연계단지는 시화국가산업단지와 기계, 전기 전자 업종과 연관성이 높은 산업단지를 지정함

2. 주요 사업

- 제조혁신 생태계 육성, 산단 내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 및 산단인프라 개선의 3가지 추진전략에 따른 주요 사업은 <표 5-1>과 같이 제안함

<표 5-1> 경기도 추진전략과 주요사업(안)

추진 전략	주요 사업
제조혁신 생태계 육성	• 스마트산업단지 제조혁신기반 구축 • 소재·부품·장비 등의 실증센터 구축 • 뿌리기업의 맞춤형 공정환경개선 지원
산단 내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	• 청년 중심 체험형 복합문화 클러스터 • 산업단지 맞춤형 인재양성 • 성별균형 포용성장 맞춤형 기업컨설팅 • 스마트팩토리 전문인력 양성
산단인프라 개선	• 노후산단 재정비 • 통합 안전망 구축 • 공유형 스마트 교통체계 도입

- 제조혁신 생태계 육성은 스마트산업단지 제조혁신기반 구축, 소재·부품·장비 등의 실증센터 구축, 뿌리기업의 맞춤형 공정환경개선 지원으로 구성하였음
 - 스마트산업단지 제조혁신기반 구축 사업은 스마트공장 구축과 고도화를 위한 솔루션 등의 비용을 지원하며 반도체, 자동차 등 IT분야의 우수한 기업의 제품 개발에 대한 지원과 제품에 대한 인증지원을 해주어 제품의 안전성과 품질 경쟁력을 확보하도록 함
 - 또한, 솔루션과 연동되는 자동화 장비, 제어기, 센서 등의 구입비용을 지원해주며 기존 시스템의 개선과 연계시스템의 추가 구축을 지원해주는 사업을 말함
 - 소재·부품·장비 등의 실증센터 구축 사업은 통해 연구장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주며 도내기업의 연구장비 활용 촉진을 통해 제품개발의 경쟁력을 강화하며 기술의 상용화 추진 및 원천기술 개발 및 상용화 단계의 도약을 지원하는 사업임
 - 뿌리산업은 주조·금형·용접·소성가공·표면처리·열처리 등 6개 기술분야를 이르는 말로 뿌리기업의 맞춤형 공정환경개선 지원은 뿌리산업을 육성하고 취급 시설의 개선을 지원함으로써 기술개발과 보급을 원활하게 하여 영세 뿌리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도록 할 수 있음

- 산단 내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는 청년 중심 체험형 복합문화 클러스터, 산업단지 맞춤형 인재양성, 성별균형 포용성장 맞춤형 기업컨설팅, 스마트팩토리 전문인력 양성으로 구성하였음
 - 청년 중심 체험형 복합문화 클러스터 사업은 창업 아이템을 가지고 꿈을 실현하고자 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하여 공간(사무실, 커뮤니티 공간 등) 및 회의실, 전시관 등의 부대시설을 제공하거나 청년들이 회사에서 사용하는 기기나 장비를 실습할 수 있도록 구성하도록 함
 - 산업단지 맞춤형 인재양성 사업은 경기도 산업단지 내 일자리센터를 통한 인재 채용서비스를 실시하거나 산업단지 근로자로 구성된 학습연구동아리 운영과 같이 직무학습을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을 말함
 - 성별균형 포용성장 맞춤형 기업컨설팅 사업은 산업단지 내 여성기업인의 정보 교류 및 기업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협의회를 구성하거나 기업의 경영 애로사항을 컨설팅하여 경영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을 말함

- 스마트팩토리 전문인력 양성 사업은 제품설계, 생산공정 개선 등을 위한 첨단기술이 적용된 스마트팩토리 솔루션의 교육 사업 및 산학연 사업을 통한 기업의 수요에 맞는 커리큘럼의 구성 및 교육 사업을 말함
- 산단인프라 개선은 노후산단 재정비, 통합 안전망 구축, 공유형 스마트 교통체계 도입으로 구성하였음
- 노후산단 재정비 사업은 도심에 입지하기 부적합한 공해 업종의 산업을 이전하거나 정비하며 R&D 센터 등을 유치하여 도심의 발전을 제고하며 도로의 정비 및 주차장과 녹지의 확보로 쾌적한 공간으로 재창조하는 사업을 말함
 - 통합 안전망 구축 사업은 112센터 긴급영상 지원, 112 긴급출동 지원, 119 긴급출동 지원, 재난상황 긴급대응 지원, 사회적 약자의 지원 등을 통합하여 구축된 스마트 시스템을 말함
 - 공유형 스마트 교통체계 도입 사업은 1)경기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스마트 교통 서비스를 수요 조사하여 2)교통수단과 기존의 인프라를 제공하여 운영계획을 수립한 후 3) 교통과 관련된 데이터를 통합·연계하는 계획을 수립하여 4) 거버넌스 구성과 운영계획을 수립하는 사업을 말함

3. 혁신계획의 구성

- 거점 산업단지인 반월국가산업단지를 중심으로 주력산업과 연관성이 높은 시화국가산업단지와 일반산업단지를 선정하였음
- 기계 및 전기전자 등 주력산업의 소재·부품·장비의 공급망을 ICT, 미래차, 첨단기계장비 등으로 고도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반월국가산업단지, 시화국가산업단지 및 일반산업단지와 지역 내 선도 기업과의 연계를 통해 글로벌 클러스터 조성을 구성하였음
 - 반월국가산업단지는 기계·전기전자 산업이 주력산업으로 거점 산업단지로 하며 시화국가산업단지는 기계 산업이 주력산업으로 연계 산업단지로 구성하였음. 일반산업단지의 경우 전기전자 산업이 주력인 산업단지가 포함되는 것이 이상적으로 보임



<그림 5-1> 경기도 혁신계획 구성(안)

4. 경기도 균형발전을 위한 산업단지의 연계

○ 손실보전제도를 활용한 경기도 산업단지의 균형발전

- 손실보전제도는 정부가 공공기관 발행채권을 간접적으로 보증하는 제도로써 이 제도를 도입 및 활용하여 상대적으로 발전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기 북동부지역의 산업단지에 적용하여 개발을 촉진하는 방법을 고민해야 함

○ 경기도 도시재생사업과 산업단지의 연계사업

- 정부에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여 산업이 침체되고 인구가 감소하는 지역을 대상으로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노후산업단지나 발전이 이루어지지 않은 산업단지의 경우 자체적으로 정비를 수행하기에는 어려운 측면이 있으므로 주변 도시재생사업과 함께 고려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임
- 국가의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서 산업단지재생과 연계된 도시재생 활성화지역에 대한 사업에 비용을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으므로 법률에 근거하여 이를 수행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임

○ 경기도 산업단지 간 수익의 투자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분양가격의 결정 등)에 의하면 산업시설용지 또는 산업시설용지 외의 용지를 조성원가 이하로 분양하는 경우에는 해당 산업단지의 산업시설용지외의 용지의 매각수익 또는 다른 산업단지의 산업시설용지의 매각수익으로 그 손실을 보전할 수 있다는 시행령에 근거하여 경기 남서부권의 산업단지 산업시설용지의 수익을 경기 북동부지역의 산업단지에 손실을 보전하는 방안이 검토되었으면 함

제3절 경기도 산업단지 활성화 방안

1. 경기도 산업단지 입주기업 및 근로자에 대한 지원

○ 경기도 시금고의 역할 확대

- 경기도 산업단지의 근로자의 경우 신용도를 기준으로 하여 이자 비율이 결정되는 것이 일반적임
- 경기도 산업단지에서 근무하는 근로자가 대출을 받는 경우 경기도의 시금고에서 보증을 해주어 이자 비율을 낮추는 방안을 고민할 필요가 있음
- 이는 경기도 산업단지 인력수급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여겨짐

○ 공공행정지원시설 및 후생복지지원시설 도입의 확대

- 산업단지의 규모를 고려하여 공공행정지원시설(동사무소, 파출소, 세무서 등)과 후생복지지원시설(복지회관, 유아원, 체육시설 등)을 적절하게 도입 확대를 고려해야 함
- 공공행정지원시설 및 후생복지지원시설은 근로자와 지역주민이 함께 수행할 수 있는 문화예술 프로그램의 기획과 추진이 필요함
- 산업단지 내 주차공간이 부족하여 산업단지 주요도로 및 이면도로에 불법으로 주차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주차시설의 확충도 필요하다고 보임
- 도심과의 접근성을 고려하여 교통지원시설을 확충하는 것이 필요함
- 만족도가 낮은 공공행정지원시설이나 후생복지지원시설의 경우 수요조사를 통해 시설의 확충 및 개선이 필요함

○ 고용지원 공모사업의 확대

- 산업단지별 고용현황을 조사한 결과를 살펴보면 외국인근로자 고용이 많은 산업단지, 청년층의 비중이 높은 산업단지 등 다양한 산업단지별 특성이 나타남(한국산업단지공단, 2018)
- 이와 같은 특성을 반영하여 산업단지별 특성에 맞는 사업에 대한 아이디어를 공모하거나 발굴하여 사업을 신청하고 혜택을 받도록 하는 방안이 필요함

○ 인력의 해소를 위한 지원

- 산업단지 실태조사를 살펴본 결과 기업들이 인력 채용시 중요하게 생각하는 요인으로 현장 적응력과 유사업무 경력이 선정되었음(한국산업단지공단, 2018)
- 특성화고 학생들이 산업단지 주변 학교와 협약을 맺어 산업단지 입주기업에서 실무를 경험하고 고등학교 졸업 후 별도의 교육 없이 현장에서 일할 수 있는 제도들을 더욱 활성화하는 것이 필요함
-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격차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내일채움공제나 청년내일채움공제 등의 정책을 펼치고 있는 바 이를 더욱 확대하여 시행하는 것이 필요함
- 산업단지 실태조사를 살펴본 결과 산업단지 내 취업기피 요인 중 ‘힘든 일이 많을 것 같다’, ‘환경오염이 심할 것 같다’ 등 근로환경에 대한 요인이 높게 나타났음(한국산업단지공단, 2018)
-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기존에 지원하는 중소기업 청년 근로자 교통비 지원사업 외에 인력의 요구사항에 맞는 환경의 개선, 놀이·문화시설, 편의시설의 구축 등이 이루어져야 함

○ 공급자 중심의 관리체계 탈피

- 기존 산업단지 관리기관의 업무는 입주기업과 부지에 대한 용도제한 등과 같이 산업단지 내 인프라의 사후관리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음
- 공급자 중심의 관리체계를 탈피하여 입주기업이 필요로 하는 자금과 경영지원, 법률서비스, 규제 개선 등 실질적인 기업지원제도의 확대가 필요함
- 현행 운영하고 있는 산업단지 입주기업의 지원제도는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종합토지세 감면 등의 세금 감면 혜택과 시설 및 운영자금의 융자에 대부분 할당되어 있어 재정에 대한 확충이 필요함

2. 산업단지관리 부재에 따른 법제 변경

○ 산업입지 개발체계의 현실화 필요

- 산업단지 등 산업입지의 개발체계는 국토교통부와 지방자치단체 등으로 되어 있고 기업의 공장설립 업무는 산업단지공단, 지역진흥사업의 주관은 산업통상자원부가 관할하고 있어 산업입지 개발과 공급과정에서 기업의 요구사항이 제대로 반영되기 어려운 구조이므로 이를 현실화할 필요가 있음
- 산업단지의 관리기관이 한국산업단지공단, 지방자치단체, 입주기업협의회 등으로 다원화되어 있어 관리체계가 명확하게 형성될 필요가 있음

○ 산업단지 유형별 관리권자 및 관리기관

- 국가산업단지는 중앙부처로부터 한국산업단지공단이 주로 위탁을 받아서 관리하고 있음
 - 국가산업단지는 대부분 한국산업단지공단(KICOX)이 관리하고 있으며, 전체 국가산업의 60% 이상을 한국산업단지공단이 관리하고 있음

○ 산업단지 관리업무

- 법적인 산업단지관리 업무는 인허가, 기반시설관리, 기업지원, 구조고도화 등 전반적인 업무를 모두 포함함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5호에 의한 산업단지의 관리는 다음과 같음
 - 1) 산업단지의 용지 및 시설의 매각·임대 및 사후관리, 2) 기반시설의 설치·유지·보수 및 개량, 3) 입주기업체 및 지원기관의 사업활동 지원
 - 그러나, 실제 관리업무는 관리 기본계획 수립과 업종관리, 입주, 매각 및 임대에 관한 업무에 한정함
 - 따라서 산업단지의 경쟁력 강화에 필수적인 산업단지 기반시설의 관리에 대해서는 관리권자가 아닌 지자체에 맡겨두고 있어 관리 부재가 발생함

○ 산업단지 관리업무의 지방정부 이관을 위한 법령 정비

- 현행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5호에 의한 산업단지 관리 업무에 대한 현실화가 필요함
- 특히, 국가산업단지로 개발된 30년 이상의 국가산업단지 등을 대상으로 그 관리 업무를 산업단지공단에서 지방정부로의 이관을 통한 산업단지의 구조고도화, 산 목적에 따른 재배치, 운영의 효율화 등을 꾀할 수 있음
- 이에, 관련 법령 정비가 요구됨
- 단, 관리업무 이관에 따른 지방정부의 비용부담 등을 감안하여 중앙정부의 산업 단지 지원 등 지방정부 재정지원이 추가적으로 이루어져야 함

3. 법제 정비를 위한 의회 차원의 결의 추진 필요

- 산업단지관리 업무의 지방 이전 또는 국가산업단지에 대한 효율성 등 제고를 위한 법령정비 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의회차원의 결의를 통한 건의 필요
- 결의 내용에서 국가산업단지 지역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고 지역의 발전과 단절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국가산업단지 관리 주체의 지역이전 등을 요구 하는 사항이 포함되어야 함

결의문(안)

노후 국가산업단지 활성화를 위한 관리권한의 지방이양 법률 개정 촉구 결의안

수도권에 위치하고 있는 국가산업단지는 공장의 설립이나 예산의 지원에 있어 상대적인 차별을 받고 있으며, 이에 따라 산업단지에 입주한 기업은 메리트를 잃고 지가의 상승과 채산성 등의 악화에 시달리는 실정이다.

또한 일부 지자체의 경우 산업단지가 지역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역사원의 산업배치 및 지역현실에 맞는 특화사업, 도시 미관 개선 등을 실현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이에 자치분권의 실현 차원에서 노후 국가산업단지 활성화를 위한 관리권한을 지방 정부로 이양을 위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을 적극 촉구한다.

2020년 0월 0일

경기도 경제산업위원회 의원 일동

제 6 장

결론 및 정책제언

여 백

제6장 결론 및 정책제언

제1절 결론

본 연구는 경기도 내 산업단지 현황 조사 및 분석을 통한 경기도내 산업단지 지원방향의 제시, 지역적·공간적으로 편중된 산업단지 문제 해결을 위한 지역 균형 산업단지 개발의 제도개선 및 지원방안 마련, 경기도 산업단지의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을 통해 산업단지 지원 조례 제정 등의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 첫째, 경기도 국가산업단지 현황 및 지원 조례를 조사하였다. 현황을 분석한 결과 입주업체, 생산실적, 수출실적, 고용현황 및 가동률 등 5가지 지표가 대부분의 국가산업단지에서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경기도의 산업단지 지원 조례를 조사한 결과 「경기도 산업단지 개발 지원 조례」, 「경기도 산업단지 및 공업지역 활성화 지원 조례」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경기도 국가산업단지 현황 및 지원 조례 조사를 통해 산업단지 지원의 필요성을 4차 산업혁명의 도래와 제조혁신에 대한 요구, 경기도의 대표 산업단지의 경쟁력 약화, 경기도 산업단지의 경제적 효과의 3가지 측면에서 제시하였다.

둘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산업단지 지원 법령 및 조례를 조사하였다. 국가의 산업단지 지원 법령으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노후거점산업단지의 활력증진 및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법」이 제정되어 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산단 대개조’ 사업에 선정된 5개 지역(경상북도, 광주광역시, 대구광역시, 인천광역시, 전라남도)의 산업단지 지원 조례를 살펴보았다. 경기도와 5개 지역의 산업단지 지원 조례를 비교하여 차별점을 검토하여 경기도 산업단지 지원 조례의 방향성을 도출하였다.

셋째, 앞서 언급한 ‘산단 대개조’ 사업에 선정된 5개 지역의 산업단지 지원 사례를 제시하였다. 사례는 지원정책의 개요 및 혁신계획의 구성으로 분류하여 제시하였다. 이를 통해 경기도 산업단지의 지원정책과 혁신계획의 방향성을 도출하였다. 최종적으로 경기도 산업단지 지원방안으로 경기도 산업단지 지원을 위한 조례(안), 경기도 산업단지 개발을 위한 모델(안), 경기도 산업단지 활성화 방안 및 결의문(안)의 4가지 정책제언을 제시하였다.

제2절 정책제언

1. 경기도 산업단지 지원을 위한 조례(안)

- 경상북도, 광주광역시, 대구광역시, 인천광역시, 전라남도의 5개 지방자치단체의 산업단지 지원을 위한 조례를 검토한 결과 산업단지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산업단지회계 조례가 제정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음
- 경기도 산업단지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은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세입), 제4조(세출), 제5조(잉여금의 처리), 제6조(예비비), 제7조(준용)로 구성하였음

2. 경기도 산업단지 개발을 위한 모델(안)

- 경상북도, 광주광역시, 대구광역시, 인천광역시, 전라남도의 5개 지방자치단체의 산업단지 개발 사례를 통해 경기도 산업단지 지원정책, 주요사업 및 혁신계획을 도출하였음
- 경기도 산업단지 개발을 위한 모델(안)은 주력업종을 기계, 전기전자의 2가지 업종으로 선정하여 전자산업의 고부가화와 산업단지의 구조고도화를 통한 업종의 첨단화를 이끌어내어 미래의 선도 산업단지 구축을 목적으로 하였음
- 주요사업으로 스마트산업단지 제조혁신기반 구축, 소재·부품·장비 등의 실증센터 구축, 뿌리기업의 맞춤형 공정환경개선 지원, 청년 중심 체험형 복합문화 클러스터, 산업단지 맞춤형 인재양성, 성별균형 포용성장 맞춤형 기업컨설팅, 스마트팩토리 전문인력 양성, 노후산단 재정비, 통합 안전망 구축, 공유형 스마트교통체계 도입을 제시하였음
- 거점 산업단지는 기계·전자전자 산업이 주력산업인 반월국가산업단지를 지정하였으며 기계 산업이 주력인 시화국가산업단지를 연계산업단지로 구성하였음. 일반산업단지는 전기전자 산업이 주력인 산업단지를 구성하는 것을 제한하였음

- 경기도 균형발전을 위한 산업단지의 연계 정책을 제시하였음
 - 첫째, 손실보전제도를 활용한 경기도 산업단지의 균형발전 둘째, 도시재생사업과 산업단지의 연계사업, 마지막으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기초한 경기도 산업단지 간 수익의 투자를 제시하였음

3. 경기도 산업단지 활성화 방안

- 경기도 산업단지 입주기업 및 근로자에 대한 지원을 제시하였음
 - 경기도 시금고의 역할 확대, 공공행정지원시설 및 후생복지지원시설 도입의 확대, 고용지원 공모사업의 확대, 인력의 해소를 위한 지원, 공급자 중심의 관리체계 탈피의 5가지 지원 방향을 제시하였음
- 산업단지관리 부재에 따른 법제 변경의 방향성을 제시하였음
 - 산업입지 개발체계의 현실화의 필요성, 산업단지 유형별 관리권자 및 관리기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산업단지 관리업무를 언급하여 산업단지 관리 업무에 대한 현실화의 필요성을 제기하였음
- 법제 정비를 위한 경기도의회 차원의 결의 추진의 필요성을 언급하였음
 - ‘노후 국가산업단지 활성화를 위한 관리권한의 지방이양 법률 개정 촉구 결의안’의 결의문을 제시하였음

참고문헌 및 부록

여 백

<참고문헌>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국가법령정보센터
경기도 산업단지 ‘쏟림현상’ 심각, 2020.01, 경기일보
경기도 산업단지 및 공업지역 활성화 지원 조례, 경기도의회
경기도 산업단지 개발 지원 조례, 경기도의회
경기도 외국인투자 촉진 등에 관한 조례, 경기도의회
경상북도 산업단지 개발 지원 조례, 경상북도의회
경상북도 산업단지 개발 지원 조례, 경상북도의회
경상북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경상북도의회
경상북도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조례, 경상북도의회
광주광역시 산업단지 개발 지원 조례, 광주광역시의회
광주광역시 산업단지 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 광주광역시의회
광주광역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 광주광역시의회
노후거점산업단지의 활력증진 및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법, 국가법령정보센터
대구광역시 산업단지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대구광역시의회
대구광역시 산업용지 확충 등에 관한 조례, 대구광역시의회
대구광역시 노후산업단지 재생활성화 조례, 대구광역시의회
대구광역시 외국인 투자유치 촉진 등에 관한 조례, 대구광역시의회
산업단지 일자리 실태와 정책적 지원 방안, 한국산업단지공단, 2018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국가법령정보센터
서울특별시 산업단지 개발 및 활성화 지원 조례, 서울특별시의회
인천광역시 산업단지 개발 지원 조례, 인천광역시의회
인천광역시 노후산업단지 구조고도화 지원 조례, 인천광역시의회
인천광역시 지역산업육성에 관한 조례, 인천광역시의회
인천광역시 외국인 투자유치 및 지원 조례, 인천광역시의회

전라남도 산업단지 개발 지원 조례, 전라남도의회

전라남도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라남도의회

전라남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전라남도의회

코로나19 극복 기반인 제조업의 공간 혁신 보도자료, 2020.05.08., 국토교통부

2018.8월 주요 국가산업단지 산업동향 통계표, 한국산업단지공단

2018년 2분기 전국산업단지 시도별 현황, 한국산업단지공단

2019.8월 주요 국가산업단지 산업동향 통계표, 한국산업단지공단

2019년 2분기 전국산업단지 시도별 현황, 한국산업단지공단

2020.8월 주요 국가산업단지 산업동향 통계표, 한국산업단지공단

2020년 2분기 전국산업단지 시도별 현황, 한국산업단지공단

부록 1. 노후거점산업단지의 활력증진 및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법

[시행 2020. 7. 30.] [법률 제 16904호, 2020. 1. 29., 타법개정]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이 법은 노후거점산업단지의 활력증진과 경쟁력강화에 대한 공공의 역할 및 지원을 강화하여 균형 있는 지역발전과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노후거점산업단지”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산업단지로서 착공 후 20년 이상이 경과한 산업단지 중 균형 있는 지역발전과 건전한 국민경제 발전의 주요 거점역할을 하는 산업단지를 말한다.

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국가산업단지

나.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일반산업단지로서 제9조에 따른 노후거점산업단지 경쟁력강화 전략계획에서 경쟁력강화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산업단지

2. “경쟁력강화”란 산업단지 내 입주업종의 고부가가치화, 기업지원서비스의 강화, 산업단지 기반시설과 지원시설 및 편의시설의 유지·보수·개량 및 확충 등을 통하여 산업입지의 기능을 향상시키고 산업단지의 경쟁력을 높이는 것을 말한다.

3. “산업단지 기반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산업집적기반시설

나. 항만·도로·용수시설·철도·통신·전기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반시설

4. “노후거점산업단지 경쟁력강화사업(이하 “경쟁력강화사업”이라 한다)이란 제13조에 따른 노후거점산업단지 경쟁력강화 사업계획에 따라 시행하는 다음 각 목의 사업을 말한다.

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산업단지 기반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일련의 사업으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 1) 「경관법」 제16조에 따른 경관사업
- 2)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1조제1항제5호에 따른 에너지·자원기술의 개발 사업
- 3)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에 따른 산업단지 재생사업
- 4)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에 따른 산업단지 구조고도화 사업
- 5)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10조제4호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 지원 및 같은 조 제11호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시범사업 및 보급사업
- 6)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28조의2에 따른 에너지경영시스템의 지원 및 같은 법 제32조에 따른 에너지진단
- 7)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역세권개발사업 (산업단지 내에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철도산업발전기법」 및 「도시철도법」에 따라 건설·운영되는 철도역이 위치한 경우에 한정한다.
- 8)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항만재개발사업
- 9)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생태산업 단지의 지정

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산업집적, 인력양성 및 연구기반 구축 등을 위하여 추진하는 일련의 사업으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 1) 「고용보험법」 제19조에 따른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 같은법 제25조에 따른 고용안정 및 취업 촉진사업 및 같은 법 제31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 촉진을 위한 사업
- 2)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9조, 제10조, 제11조, 제12조, 제14조, 제16조, 제17조의3, 제25조의2에 따른 기술개발사업
- 3)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제9조에 따른 인력채용 연계사업 및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산학·연계 맞춤형 인력양성사업

- 4)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7조부터 제40조까지의 중소기업 간 협업사업
 - 5)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37조의4에 따른 연구시설·장비의 활용지원 및 같은 법 제39조에 따른 산학연협력 촉진에 대한 지원
 - 6)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기술단지의 조성사업
 - 7)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1조에 따른 산업기술개발사업 및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
 - 8)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의3에 따른 산업집적지경쟁력강화사업 및 같은 법 제22조의4에 따른 산학융합지구의 지정
- 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정주여건 등 근로자 생활환경 개선을 위하여 추진하는 일련의 사업으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 1) 「고용보험법」 제20조에 따른 고용창출의 지원
 - 2) 「근로복지기본법」 제15조에 따른 근로자주택공급제도,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주택구입자금등의 융자, 같은 법 제28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근로복지시설 설치 등의 지원
 - 3) 「영유아보육법」 제12조에 따른 국공립어린이집의 설치
 - 4)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제24조제2호에 따른 공동숙박시설의 지원 및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중소기업 장기 재직자의 입주 지원
- 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문화·체육시설의 설치 등 문화환경 개선을 위하여 추진하는 일련의 사업으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 1) 「국민체육진흥법」 제2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국민체육시설 확충을 위한 지원사업
 - 2) 「문화예술진흥법」 제18조제9항 및 제10호에 따른 공공미술(대중에게 공개된 장소에 미술작품을 설치·전시하는 것을 말한다) 진흥을 위한 사업이나 그 밖에 도서관의 지원·육성 등 문화예술의 진흥을 목적으로 하는 문화시설의 사업이나 활동
- 마. 그 밖에 노후거점산업단지 경쟁력강화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5. “경쟁력강화사업지구”란 노후거점산업단지 중 제12조에 따라 경쟁력강화사업을 추진하기로 지정된 단지를 말한다.

6. “전략계획수립권자”란 제9조에 따른 노후거점산업단지 경쟁력강화 전략계획을 공동으로 수립하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국토교통부장관을 말한다.

○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경쟁력강화사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고 관련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경쟁력강화사업의 내용을 해당 지역의 도시계획에 적절히 반영하는 등 경쟁력강화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경쟁력강화사업에 적용되는 지원사항 및 특례사항에 있어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이 법의 규정에 관한 특례보다 완화된 규정이 있으면 해당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경쟁력강화 추진체계

○ 제5조(경쟁력강화추진위원회의 설치 등) ① 노후거점산업단지의 경쟁력강화에 관한 정책을 종합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 및 국토교통부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노후거점산업단지 경쟁력강화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노후거점산업단지의 경쟁력강화를 촉진하기 위한 주요 정책
2. 제9조에 따른 노후거점산업단지 경쟁력강화 전략계획의 수립
3. 제12조에 따른 경쟁력강화사업지구의 지정에 관한 사항
4. 경쟁력강화사업 관련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5. 경쟁력강화사업에 대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지원 방안
6. 그 밖에 경쟁력강화사업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으로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위원장은 산업통상자원부차관 및 국토교통부차관이 공동으로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하되 10명 이상 30명 이내로 구성한다.

1. 정부위원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

2. 민간위원 : 산업단지 경쟁력강화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

④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6조(지방경쟁력강화추진협의회)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노후거점산업단지 경쟁력강화추진협의회를 둘 수 있다.

1. 노후거점산업단지 경쟁력강화 관련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시책

2. 제13조에 따른 노후거점산업단지 경쟁력강화 사업계획의 수립

3. 경쟁력강화사업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경쟁력강화사업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② 노후거점산업단지 경쟁력강화추진협의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7조(경쟁력강화지원기구의 지정) ① 전략계획수립권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을 노후거점산업단지 경쟁력 강화지원기구로 지정할 수 있다.

1. 노후거점산업단지 경쟁력강화 관련 시책의 발굴

2. 노후거점산업단지 경쟁력강화 제도발전을 위한 조사·연구

3. 제9조에 따른 노후거점산업단지 경쟁력강화 전략계획 및 제13조에 따른 노후거점산업단지 경쟁력강화 사업계획의 수립 등 지원

4. 경쟁력강화사업의 시행 및 운영·관리 지원

5. 노후거점산업단지 경쟁력강화 전문가의 육성 및 파견

6. 그 밖에 노후거점산업단지의 경쟁력강화와 관련하여 필요한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② 노후거점산업단지 경쟁력강화지원기구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8조(경쟁력강화관계자협의회의 설립) ① 경쟁력강화사업에 대한 입주기업, 토지 소유자, 지역주민 등의 제안 또는 자문 등을 위하여 입주기업, 토지소유자, 지역 주민 등으로 구성된 노후거점산업단지 경쟁력강화관계자협의회를 설립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립요건을 갖추어 전략계획수립권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② 노후거점산업단지 경쟁력강화관계자협의회의 설립절차,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장 경쟁력강화 전략계획 등

- 제9조(경쟁력강화 전략계획의 수립) ① 전략계획수립권자는 노후거점산업단지의 경쟁력강화를 위하여 10년 단위의 노후거점산업단지 경쟁력강화 전략계획(이하 “전략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전략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산업별 입지현황 및 가치사슬에 의한 산업단지간 거점 및 연계구조에 관한 사항
 2. 노후거점산업단지의 선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노후거점산업단지별 기본현황 및 노후도 진단
 4. 경쟁력강화사업의 기본목표 및 중장기 발전방향에 관한 사항
 5. 경쟁력강화사업의 연도별 확대 계획
 6. 노후거점산업단지별 경쟁력강화사업 추진전략 및 방법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노후거점산업단지의 경쟁력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③ 전략계획은 다음 각 호의 계획을 고려하여 수립하여야 한다.
 1. 「국토기본법」 제6조제2항제1호에 따른 국토종합계획
 2.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4조에 따른 국가균형발전 5개년계획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도시·군계획
 4.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도권정비계획
 5.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른 산업입지수급계획
 6.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산업집적활성화 기본 계획

④ 전략계획수립권자는 전략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지방자치 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은 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러 하지 아니하다.

⑤ 전략계획수립권자는 제4항에 따라 전략계획이 확정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바에 따라 공고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 여야 한다.

⑥ 그 밖에 전략계획의 수립·변경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0조(실태조사) ① 전략계획수립권자는 전략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산업단지 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전략계획수립권자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관계 중앙 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관련 기관 및 단체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이 나 의견의 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제1항이 실태조사 및 제2항의 자료 제출과 의견 진술 요청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장 경쟁력강화지구 지정 및 사업시행 등

○ 제11조(경쟁력강화사업지구의 공모) ① 전략계획수립권자는 경쟁력강화사업지구 를 지정하려 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노후거점산업단지를 관 할하는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공동으로 공모를 실 시하여야 한다. 다만 경쟁력강화사업의 추진이 시급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모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경쟁력강화사업지구로 지정받고자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쟁력강화사업지구 지정요청서(이하 “지정요청서”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1. 경쟁력강화사업의 기본 목표와 중장기 발전방향
2. 경쟁력강화사업 대상 산업단지의 기본현황 및 노후도

3. 연도별 경쟁력강화사업 추진 계획
4. 업종고도화 및 혁신생태계 구축에 관한 사항
5. 산업단지 기반시설 설치에 관한 사항
6. 산업집적, 인력양성 및 연구기반 구축 등에 관한 사항
7. 정주여건 등 근로자 생활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8. 문화·체육시설의 설치 등 문화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9. 경쟁력강화사업 추진을 위한 자원 확보 방안
10. 그 밖에 경쟁력강화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경쟁력강화사업지구로 지정받고자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산업단지의 지정권자(「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지정권자를 말한다). 관리권자(「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6호에 따른 관리권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및 관리기관(「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7호에 따른 관리기관을 말한다)과 협의하여야 하며 그 협의 결과를 지정요청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 제12조(경쟁력강화사업지구의 지정) ① 전략계획수립권자는 지정요청서에 대한 평가결과를 토대로 경쟁력강화사업지구를 지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평가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고려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1. 사업 추진 시 국가 및 지역경제에 대한 기여도가 높을 것
 2. 산업 여건의 변화, 주변 지역의 도시화 등으로 인하여 산업단지의 업종 고부가가 치화 및 산업재배치가 필요할 것
 3. 입주기업체의 경영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노후화된 산업단지 기반시설 등○ 유지·보수·개량·확충이 필요할 것
 4. 사업추진을 위한 자원 확보 방안이 마련되어 있을 것
 5. 제8조에 따른 노후거점산업단지 경쟁력강화관계자협의회 또는 이와 유사한 성격의 협의회 등이 수립되어 있거나 사업 자원 확보를 위한 입주기업들의 자구적인 노력이 충분할 것
 6. 지정요청서에 따른 경쟁력강화사업 추진 계획이 전략계획에 부합할 것
 7. 그 밖의 사유로 입주기업에 대한 지원 및 산업단지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지원이 시급할 것

③ 전략계획수립권자가 제1항에 따라 경쟁력강화사업지구를 지정하려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 전략계획수립권자는 제1항에 따라 경쟁력강화사업지구를 지정하였을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 제13조(경쟁력강화사업의 시행) ① 제12조에 따라 지정된 경쟁력강화사업지구의 제14조에 따른 사업시행자는 노후거점산업단지 경쟁력강화 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전략계획수립권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받은 사업계획을 변경하는 경우도 또한 같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사업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45조의2제3항에 따른 구조고도화계획 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9조의2제5항에 따른 재생사업계획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구조고도화계획”과 “재생사업계획”은 “사업계획”으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을 승인받은 경우 사업계획의 내용에 따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45조의2에 따른 구조고도화계획을 승인받거나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9조의2에 따른 재생사업지구의 지정이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④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의 시행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사업계획에서 정하는 내용에 따라 제2제4호 각 목에 따른 개별 사업의 해당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⑤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45조의2제4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전체 산업단지 면적의 100분의 30까지 구조고도화사업으로 계획할 수 있다. ⑥ 전략계획수립권자가 사업계획을 승인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 제14조(사업시행자) ① 경쟁력강화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사업시행자는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

1. 국가·지방자치단체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는 경쟁력강화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경쟁력강화사업의 일부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대행사업자”라 한다)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1. 해당 경쟁력강화사업지구의 토지소유자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민간기업이 경쟁력강화사업을 목적으로 출자에 참여하여 설립한 법인

○ 제15조(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허가 등의 의제) ① 제13조에 따라 전략계획수립권자가 사업계획을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할 경우, 그 사업계획에 대한 다음 각 호의 허가·결정·인가·협의 또는 승인 등(이하 이 조에서 “인·허가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제3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인·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보며 제13조에 따라 사업계획의 승인을 고시한 경우에는 관계 법률에 따른 인·허가등의 고시나 공고를 한 것으로 본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용도지역, 용도지구 및 용도구역의 지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9조의7에 따라 재생사업지구지정권자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같은 법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 같은 법 제86조에 따른 도시·군계획시설사업시행자의 지정 및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2. 「도시개발법」 제3조에 따른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사업시행자의 지정,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3.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산업단지개발계획의 변경과 같은 법 제17조·제17조의2 및 제18조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변경 승인
4. 「수도법」 제17조 및 제49조에 따른 일반수도사업 및 공업용수도사업의 인가, 같은 법 제52조 및 제54조에 따른 전용상수도 및 전용공업용수도의 설치 인가
5. 「하수도법」 제11조에 따른 공공하수도(분뇨처리시설만 해당한다)의 설치인가,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공공하수도 공사의 시행허가 및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공공하수도의 점용허가

6. 「하천법」 제6조에 따른 하천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 같은 법 제25조 및 제27조에 따른 하천기본계획 및 하천공사시행계획의 변경,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공사시행의 허가 및 하천공사실시계획의 인가,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허가
7. 「도로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에 대한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 허가 및 같은 법 제107조에 따른 도로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
8. 「사도법」 제4조에 따른 사도개설 허가
9. 「산지관리법」 제14조·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신고, 같은 법 제21조에 따른 산지전용된 토지의 용도변경 승인
10.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4항에 따른 입목벌채 등의 허가·신고
11. 「사방사업법」 제14조에 따른 벌채 등의 허가 및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사방지 지정의 해제
12. 「공강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3항에 따른 지도등의 간행 심사 및 같은 법 제86조제1항에 따른 사업의 착수·변경 또는 완료의 신고
13.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연고자가 없는 분묘의 개장허가
14. 「국유재산법」 제30조에 따른 행정재산의 사용허가 및 같은 법 제40조에 따른 행정재산의 용도폐지
15.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1조에 따른 행정재산의 용도폐지 및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행정재산의 사용·수익허가
16. 「소하천정비법」 제5조에 따른 관리청과의 협의, 같은 법 제6조 및 제8조에 따른 소하천정비종합계획 및 소하천정비시행계획의 변경,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소하천공사의 시행허가 및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소하천점용의 허가
17.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10조에 따른 에너지사용계획의 협의
18. 「전기사업법」 제8조에 따른 자가용전기설비의 공사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
19. 「폐기물관리법」 제29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승인 또는 신고

20.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건축허가·건축신고 사항의 변경,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허가·신고,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건축협의 및 같은 법 제83조제1항에 따른 공작물 축조 신고

21. 「골재채취법」 제22조에 따른 골재채취의 허가

22.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공장설립등의 승인(사업시행자가 사용하기 위한 공장설립등에 관한 계획을 포함한 경우만 해당한다)

23.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에 따른 대규모점포의 개설등록

24. 「집단에너지사업법」 제4조에 따른 집단에너지의 공급 타당성에 관한 협의

25.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체육시설업 사업계획의 승인

26. 「택지개발촉진법」 제8조에 따른 택지개발계획의 수립 및 같은 법 제9조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

27. 「물환경보전법」 제49조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의 승인

28. 「관광진흥법」 제52조에 따른 관광지 및 관광단지의 지정, 같은 법 제54조에 따른 관광지 및 관광단지 조성계획의 수립 및 승인

29.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
② 제1항에 따른 인·허가등의 의제를 받으려는 자가 사업계획의 승인(변경승인을 포함한다)을 신청하는 때에는 사업계획에서 정하는 내용에 따라 해당 법률에서 정하는 관련 서류를 함께 전략계획수립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전략계획수립권자는 사업계획의 승인(변경승인을 포함한다)을 할 때 그 내용에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④ 전략계획수립권자로부터 협의를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협의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하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른 협의의 내용에 각종 위원회의 심의를 요하는 사항이 포함된 경우에는 해당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그 결과에 따라 협의를 하여야 한다.

○ 제16조(비용부담) 경쟁력강화사업에 필요한 비용은 사업시행자가 부담한다.

○ 제17조(개발이익의 재투자 등) ① 사업시행자와 대행사업자는 경쟁력강화사업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개발이익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쟁력강화사업에 재투자하여야 한다. ② 경쟁력강화사업지구 내 토지이용계획 또는 용도별 구역 변경 등으로 지가차액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토지소유자로부터 지가상승분을 기부받아 경쟁력강화사업에 투자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에 따라 경쟁력강화사업에 재투자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18조(경쟁력강화사업계정의 설치) ① 사업시행자(제1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사업시행자는 제외한다. 이하 제19조까지 같다)는 경쟁력강화사업에 대한 사업비의 원활한 조달과 집행을 위하여 경쟁력강화사업계정(이하 “사업계정”이라 한다)을 설정·운용하여야 한다. ② 사업계정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운용한다.

1. 제17조제1항에 따른 개발이익
2. 제17조제2항에 따른 지가차액의 환수분
3. 정부 또는 정부 외의 자로부터 받은 출연금·출자금 및 융자금(제22조제2항)에 따른 지원금을 포함한다.
4. 차입금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
- ③ 사업계정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한다.
1. 경쟁력강화사업을 위한 조사·연구비·전문가활용비 및 기술비
2. 사업계획의 수립 비용
3. 경쟁력강화사업지구 내 산업단지 기반시설, 지원시설 및 편의시설의 설치·정비·운영 등에 필요한 비용
4. 경쟁력강화사업지구 내 산업집적, 인력양성 및 연구기반 구축에 필요한 비용
5. 경쟁력강화사업지구 내 근로자 생활환경 개선 및 문화환경 개선에 필요한 비용
6. 경쟁력강화사업지구 내 임대주택 건설·관리 비용
7. 경쟁력강화사업지구 내 지식산업센터 설립 비용
8. 경쟁력강화사업지구 내 휴업·폐업 공장용지 등의 매입 비용 등
9. 경쟁력강화사업에 필요한 비용
10. 그 밖에 경쟁력강화사업에 필요한 사항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제19조(경쟁력강화사업계정의 운용) ① 사업시행자는 사업계정의 자산을 그 밖의 자산과 구별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② 사업시행자는 해당 연도에 사용하지 못하고 남은 사업계정을 다음 연도 경쟁력강화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적립할 수 있다. ③ 사업시행자는 사업계정의 여유자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운용할 수 있다.

○ 제20조(총괄사업관리자) ① 전략계획수립권자는 경쟁력강화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제7조에 따른 노후거점산업단지 경쟁력강화지원기구를 총괄사업관리자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총괄사업관리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모든 경쟁력강화사업을 총괄 관리하며 사업계정의 운용 실적 및 향후 운용 계획을 정부에 정기적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 제21조(경쟁력강화사업지구의 지정해제) ① 전략계획수립권자는 제12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경쟁력강화사업지구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1. 경쟁력강화사업지구로 지정된 후 2년간 사업시행자가 사업계획의 승인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2. 사업시행자가 사업계획을 승인을 받고 1년 이내에 경쟁력강화사업에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

② 전략계획수립권자는 제1항에 따라 지정을 해제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사업시행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제5장 경쟁력강화를 위한 지원 및 규제특례

○ 제22조(자금지원 등)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경쟁력강화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행정적·재정적·금융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경쟁력강화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8조제3항 각 호에 대하여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다. ③ 도로 및 용수공급시설, 전기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반시설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해당 시설을 공급하자 나가 지원한다. ④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경쟁력강화사업지구로 이전하는 기업, 교육·연구기관, 사업자단체, 의료기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이 항에서 “기업등”이라 한다) 또는 경쟁력강화사업의 시행으로 경쟁력강화사업지구 밖으로 이전하는 기업등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경쟁력강화사업지구에서의 지식기반산업 집적활성화를 위하여 해당 산업단지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지식기반산업집적지구로 우선 지정할 수 있다.

○ 제23조(조세 및 부담금의 감면)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경쟁력강화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관세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세·소득세·관세·취득세 및 재산세 등의 조세를 감면할 수 있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경쟁력강화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및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개발부담금, 환경개선부담금, 기반시설설치비용, 광역교통시설 부담금 및 교통유발부담금을 감면하거나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제24조(민간투자사업) 전략계획수립권자는 경쟁력강화사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의 규정에 따라 민간투자사업으로 산업단지 기반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 제25조(다른 법률에 대한 특례) 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8호 및 제28조의5에도 불구하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경쟁력강화사업 지구에 대해서는 입주기업 및 입주시설에 관하여 사업계획에서 달리 정하여 승인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권자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른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에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경쟁력강화사업지구의 근로자 복리후생시설 확충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부대시설의 개념을 사업계획에서 달리 정하여 승인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권자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른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에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경쟁력강화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경쟁력강화사업지구를 관할하는 시·도의 조례에도 불구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7조 및 제78조에 따른 용도지역별 최대한도 범위에서 건폐율 및 용적률을 완화하여 사업계획(제2조제4호가목3)과 4)의 사업내용이 함께 포함되어 있는 경우를 말한다)을 승인할 수 있다. 이 경우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9조의7에 따른 재생시행계획에 이를 반영하여 승인하여야 한다.

연구진

연구책임자 : 박형근 (신안산대학교 교수)

■ 신안산대학교 산학협력단 연구원 : 권용광 (신안산대학교 교수)

정기수 (신안산대학교 교수)

■ 경기도의회
산업단지 활성화포럼

회장 : 김현삼 (경제노동위원회)

회원 : 강태형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원 : 김영해 (경제노동위원회)

회원 : 김종배 (건설교통위원회)

회원 : 김종찬 (교육기획위원회)

회원 : 박창순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회원 : 성준모 (교육행정위원회)

회원 : 손희정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원 : 장동일 (도시환경위원회)

회원 : 정승현 (농정해양위원회)

※ 본 보고서는 신안산대학교 산학협력단이 경기도의회의 연구용역 의뢰를 받아 수행한 연구의 결과입니다. 이 연구에서 제시된 대안이나 의견 등은 경기도의회의 공식적인 의견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